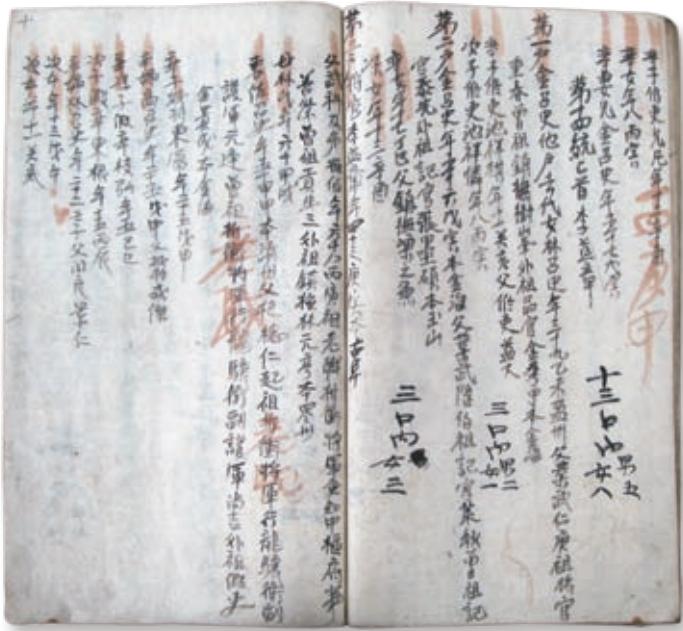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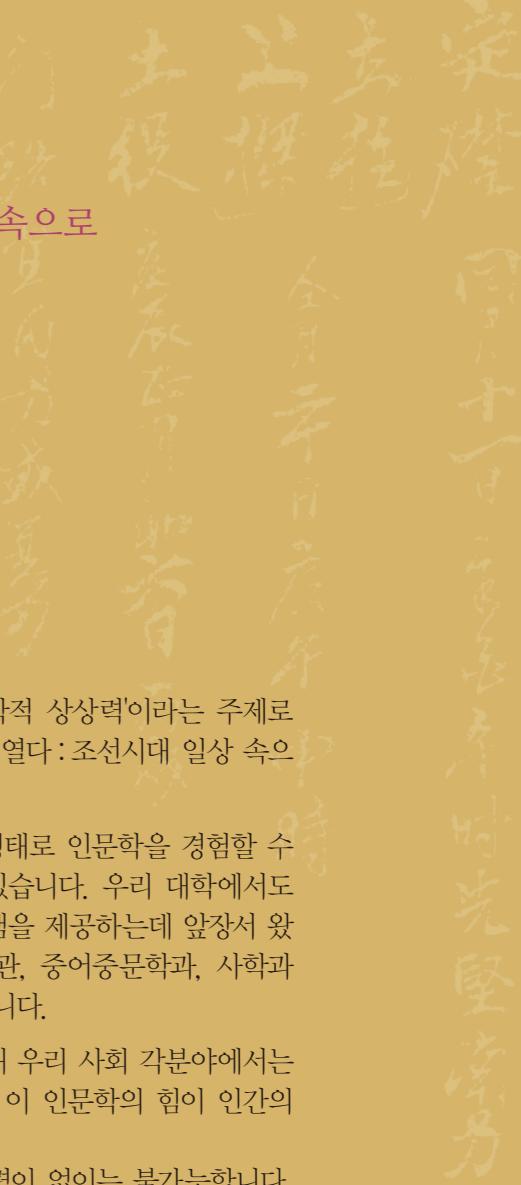


제주 옛 문서의 빗장을 열다

– 조선시대 일상속으로



2010. 9. 13 (월) ~ 10. 29 (금)



인사말

한가위가 다가오는 싱그러운 가을입니다. 이 좋은 계절에 '기억과 인문학적 상상력'이라는 주제로 2010년 인문주간을 맞아 제주대학교 박물관에서 '제주 옛 문서의 빗장을 열다: 조선시대 일상 속으로'라는 특별전을 마련해 주신데 대해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연구재단은 2006년부터 '인문주간'을 실시하여 대중들에게 다양한 형태로 인문학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열림과 소통의 인문학'을 추구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에서도 매번 이를 활용하여 제주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형태의 인문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앞장서 왔고, 특히 올해는 우리 대학 인문과학연구소를 주관기관으로 하여 박물관, 중어중문학과, 사학과 등에서 전시 및 대중강연, 생태문화탐방 등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과학물질문화 시대를 맞아 점차 상실되어가는 인간의 도덕성 회복을 위해 우리 사회 각분야에서는 그 무엇보다도 절실히 인문학적 상상력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 인문학의 힘이 인간의 삶의 질을 더욱 풍족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는 까닭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에 우리 사회의 화두로 대두되고 있는 '창의'는 인문학적 상상력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경쟁과 이기주의에 매몰된 창의성이 아니라, 사회 모든 구성원들에게 기여하고 헌신하는 창의적 인재를 우리 사회는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듯이, 역설적으로 모든 학문은 인간, 즉 인문학으로 통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번 인문주간을 계기로 창의적인 인재 양성에 인문학의 중요성을 다시금 되돌아보게 됩니다.

아무쪼록 이번 전시를 위해 재정적 지원을 해준 한국연구재단, 인문주간 행사를 후원하는 교육과학기술부, 우리 대학 인문과학연구소와 박물관 등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10년 9월 13일

제주대학교 총장 허 향 진



2010. 9. 13(월) ▷ 2010. 10. 29(금)

주최	한국연구재단
후원	교육과학기술부
주관	제주대학교 박물관
총괄	김동전
기획	안진희, 한금실, 이규복
전시협조	김익수, 김중수, 김영민, 김현주, 허동근, 허재형
행정	김희선
발행일	2010. 9
발행	국립제주대학교 박물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교 66 제주대학교 박물관 tel 064-754-2241 fax 064-702-0645
홈페이지	www.museum.jejunu.ac.kr
디자인	my namu

일러두기

1. 본 도록의 수록유물은 제주대학교 박물관 소장품입니다. 동의 없이 무단 전재할 수 없다.
2. 크기는 가로×세로 순이며, 실측단위는 cm이다.

2010 인문주간 특별 기획전시

제주 옛 문서의 빗장을 열다 - 조선시대 일상 속으로

전시회를 개최하며

열림과 소통의 인문학을 지향하는 '2010년 인문주간'의 주제는 '기억과 인문학적 상상력'입니다. 이 인문주간을 맞아 열리는 '제주 옛 문서의 빗장을 열다: 조선시대 일상 속으로'라는 오늘의 전시회는 옛 문서를 통해 조선시대 제주의 일상을 기억하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인간은 유한한 삶을 살아가지만, 여러 방법을 통해 과거의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기억합니다. 축적된 경험과 지식은 단순히 과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미래를 비추는 역사의 등불로 작용합니다. 우리가 역사학을 '미래학'이라 부르는 이유는 이 때문입니다.

오늘 전시된 조선시대 제주인들의 삶의 과정에서 남겨진 다양한 생활문서들은 제주인들의 역사와 문화를 고스란히 보여 주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전, 제주 여성들이 호주를 승계하고, 밭주인으로 토지를 매매하는가 하면, 출륙이 금지되던 시기에 제주를 떠날 수 있도록 허가했던 출선기, 개인의 결혼과 환갑, 죽음, 재산의 분배 등 소중한 기록들이 오랜 시간의 빗장을 열고 우리 앞에 다가섭니다. 이 기록들을 통해 일제에 나라를 빼앗긴 100년을 기억하는 오늘, 우리는 근대란 명분으로 사라져간 제주의 전통과 문화가 얼마나 일제에 의해 왜곡되었는가를 기억해내야 할 것입니다.

100년전 우리 제주인들의 생활의 기억 속으로 들어가는 이번 전시회가 현재를 돌아보고 새로운 미래를 꿈꾸는 귀중한 시간으로 남기를 바라며, 끝으로 전시 준비를 위해 노력해 주신 모든 분들에 게 깊은 감사드립니다.

2010년 9월 13일

제주대학교 박물관장 김동전

contents

1. 여성도 호주였다.	07				
1-1. 호적증초	1-2. 호구단자	1-3. 준호구	1-4. 호적표		
2. 관직의 길로 나서다.	12				
2-1. 교지	2-2. 칙명	2-3. 망기	2-4. 첨	2-5. 전령	2-6. 시권
3. 아내로 맞이하옵고저	20				
3-1. 혼서	3-2. 기조택일지				
4. 문서 한 장에 새겨진 선인의 경제생활	23				
4-1. 명문	4-2. 불망기	4-3. 토지매도증서	4-4. 입안	4-5. 첨문	
5. 소통과 단절 / 출륙을 허가해주소서	29				
5-1. 밭팔	5-2-1. 소지	5-2-2. 소지	5-3. 출선기	5-4. 노인기	
6. 공동의 가치를 위한 조직	35				
6-1-1. 계	6-1-2. 계	6-2. 단상계			
7. 수연시로 환갑잔치를 흥겹게	40				
7-1. 수연시					
8. 저승길에 마지막 남은 일	41				
8-1. 화허문	8-2. 도허문	8-3-1. 장사택일지	8-3-2. 장사택일지		
9. 목판	48				
해설	50				

庚熙二年十一月 日清冊牧
考已卯成籍戶口帳內左面第7下道衣難里住第1統5戶妻司僕
年卒二戊寅奉清冊又僕司僕高弼祖留鄉別監光玉曾祖軍資監主簿留
鵝外祖朴衝將軍龍驤衛副司直留鄉座首金大聲奉金寧妻高氏年
奉清冊父榮海將軍訓鍤院僕正留鄉座首自通祖僕司僕留鄉別監
本清冊父榮海將軍訓鍤院僕正留鄉座首自通祖僕司僕留鄉別監
留鄉座首漢昭外祖訓鍤院僕正高弼文奉清冊奉
午清冊官擎年三庚寅卒婦姜氏年二十六子次女氏年丙酉辰
生年丙子子父正兵金卯男母姜德生卒次連今年二庚寅父奇
婢日今卒奴婢丁金連同年丙子節父奇奴德山母奴連生卒丙子今年二
正兵俞男良女金生雇丙子母姜連生卒次丙子今年二
正兵俞男良女金生雇丙子母姜連生
丙子年二庚寅父奇奴德山母奴連同世良女俞生丙子母姜連

1. 여성도 호주였다

辛子鎮撫東蓮
辛婦戶邑史年五十五
次子葉武東昇
次子葉武東昇
辛孫子用瑞年五
一際

조선시대 호적은 국가가 주민에 대한 신분의 변별, 군역(軍役) 등의 역과 세금 징수를 위한 기초 장부로서 작성되었다. 호적의 작성은 3년마다 한번씩 호주(戶主)가 호의 구성원에 대한 상황과 기타 변동사항이 적힌 호구단자를 작성하면서 시작된다. 호적이 작성되던 해는 간지에 자(子), 묘(卯), 오(午), 유(酉)가 든 해로, 식년(式年)이라 한다. 마을에서는 식년 정월이 돌아오기 전, 전년 7월경부터 각 집안에서 작성한 호구단자를 수합하여 검토한 후 마을 자체적으로 호적자료를 작성하였다. 이 마을단위로 작성된 호적을 **호적중초**라고 한다.

마을에서는 이 호적중초와 호구단자를 해당 관청에 제출하게 되는데, 관청에서는 지난 식년의 호적대장과 대조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였다. 만약 이상이 있으면 빨간 색으로 표시하여 정정하고, 이상이 없으면 통, 호를 기입한 후 수령의 사인이나 관인을 찍고 각 마을로 내려 보낸다. 마지막으로 마을에서는 각 호에 호구단자를 돌려주고, 호적중초는 마을에 보관하면서 군역이나 세금 징수에 활용하였다. 현재 호적중초는 전국적으로 제주도에서 특히 집중적으로 발견되고 있으며, 제주도 내에서도 옛 대정현 지역에서 주로 발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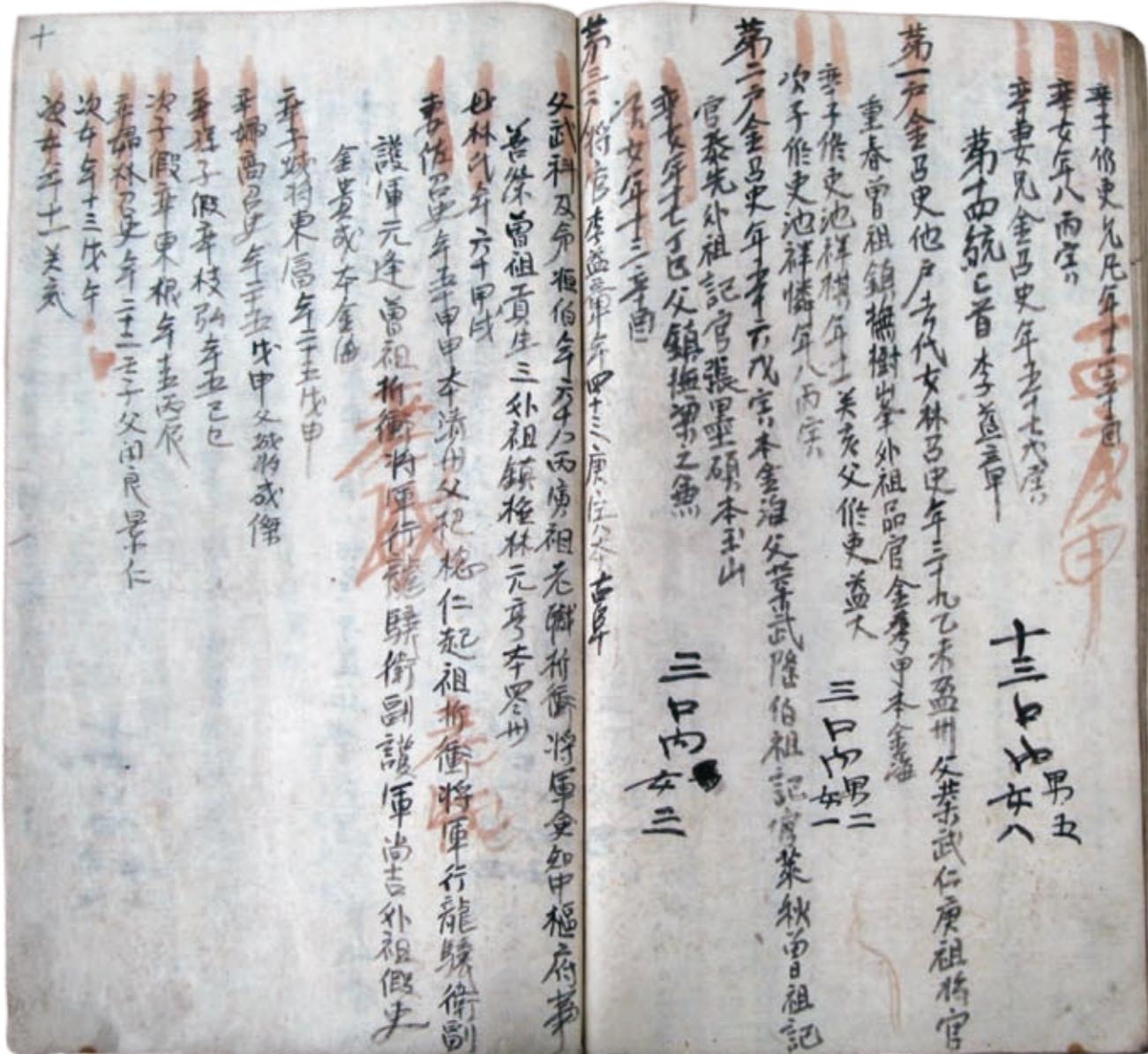
조선시대 제주의 호적은 고유한 생활방식과 유교화의 수용 정도, 경제적 여건 등으로 인해 타지방과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여주기도 한다. 그 예로 철저한 장남분가, 제가의 균분상속, 문중조직이나 계층의식의 미발달, 지역적으로 밀접한 통혼권, 자유로운 이혼과 재혼, 취첩현상 등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부계사회라고 하는 조선시대에 여성이 호를 대표하는 호주로 기재되어 있는 사례가 적지 않게 등장한다. 이 것은 18세기 이미 가부장적 부계질서가 확립되었다던 조선의 현실이 실제와는 거리가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가 되고 있다.

호구단자는 관에서 호구장적을 만들 때 호주가 자기 호(戶: 집)의 상황을 적어서 관에 제출한 문서이다. 호주와 처의 경우에는 나이, 본관, 4조를 기재하였으며, 가족의 경우에는 직업, 이름, 나이를, 며느리의 경우에는 성씨, 나이, 본관을 기재하였다. 노비의 경우에는 이름, 나이, 부모의 이름과 신분 및 남편과 처의 이름과 도망여부를 기재하였다. 마지막으로 호구단자의 제출년도와 신고인인 호수(戶首)의 성명을 쓰고 마지막에 수결(手決)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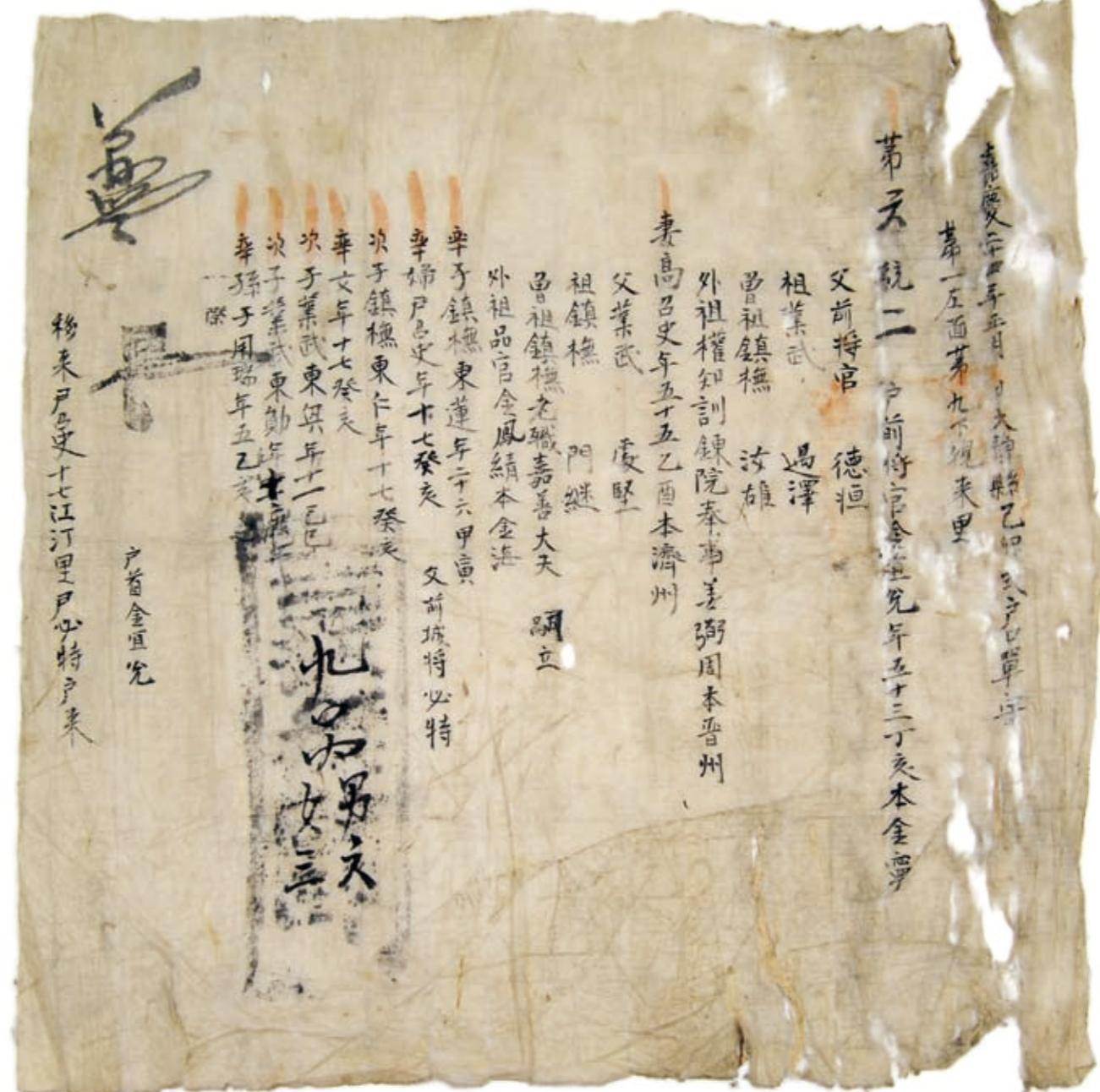
준호구는 관에서 개인의 호적사항을 증명해준 문서이다. 개인이 요청하면 관에서는 보관중인 호적대장에서 해당 호에 관한 사항을 그대로 옮겨 적어 발급하였다. 현재의 호적등본이나 주민등록등본과 유사하다.

호적표는 갑오개혁 이후에 조선시대 호구단자가 변화된 문서이다. 호구단자와 호적표의 차이점은, 우선 호구단자에는 호주 배우자의 4조에 대한 사항도 기록되었으나 호적표에는 이것이 빠져있다. 또한 호구단자에는 소유 노비의 이름과 나이 등을 기록하였으나 호적표에는 노비 대신 고용인을 남녀로 구분하여 그 수만 밝히도록 되었다. 다음으로 호적표에는 호구단자에 없던 가택 상황 등을 추가하였으며 전거주지와 이거월일 등을 밝히도록 되어있다. 그밖에 호구단자는 일정한 양식이 없었기 때문에 지역 또는 시기에 따라 약간씩 달리 작성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호적표는 미리 인쇄된 양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 지역과 시기에 관계없이 동일한 형식이다.



1-1. 호적중초 21×34cm (대정읍 하모3리 마을회관 소장)

1812년(순조12) 대정현 하모슬리에서 작성한 **호적증초**이다. 제14통 1호의 호주는 39세 여성인 임조이(조이는 **김吏**의 이두식 표기, 평민 신분의 처에 대한 호칭임) 원래 호주였던 김조이가 다른 호로 옮겨가면서 대신 호주를 승계하고 있다. 다음 2호의 호주도 56세의 여성 김조이로 10대의 두 딸과 함께 살고 있다.



1-2. 호구단자 $31 \times 32.7\text{cm}$

1819년(순조19) 좌면 하예래리 제16동 2호에 거주하는 53세 전장관 김의태가 작성하여 관에 제출한 호구단자이다.

庚熙辛八年十一月 日清用牧
考己卯歲籍戶口帳內左面第十七下道衣難里住第十一統五戶裏司僕夫命賈
年辛未戊寅奉清州父僕司僕尚弼祖留鄉別監光玉曾祖軍資監主傳留鄉別監大
鵬外祖折衝將軍龍驤衛副司直留鄉庄首金大聲年奉金寧妻高氏年辛未癸酉
奉清州父僕司僕尚弼祖留鄉別監庭智曾祖
留鄉庄首漢昭外祖訓鍊院奉奉高乾文奉清州奉金氏年三壬辰仲婆氏年三丙而
午丙子哨官擎擊隨年辛庚戌率婦姜氏年二壬子次庚戌年丙酉丙辰率孫金氏
年辛未壬子幼金氏年四丙子率次万上年二壬子姜氏父私沒丙金母姜氏生辛未連
生年辛未壬子父正兵金伊另母孫德生率次連今年辛未庚申父寺汝德山母私沒連
率次連今年大丙子父正兵高衣民母私沒連生率次丙今年辛未庚申父寺汝德山母私沒
連母金氏年辛未壬子父寺汝德山母私沒連生奴妻良女俞生年甲庚子父
正兵俞另母良女金生雇工而姜氏卜今年丙酉丙申父寺汝高另母寺汝已生率姜氏
補丙史年辛未戊寅奉清州父僕司僕尚弼祖留鄉別監同母良女俞生丙子而私沒連
生母姜氏

1-3. 준호구 25.3×36.5cm

1699년(숙종25) 12월 제주목에서 좌면 하도 의이리에 거주하는 제11통 5호 견사복 부명현에게 발급한 준호구이다. 부명현의 당시 나이는 62세로 처 고씨(67세)와 세 명의 딸들, 아들 부부, 손녀, 그리고 37세 노비 만상을 비롯한 수명의 노비와 살고 있었다.

四十七

金羅南道大靜郡		左
金才得	六十四	慶州
里來倪	妻元氏年五十一	農
品官龍瑞	子承金年四	堂子議
外祖昌官李光毅	女年八	農
將官宜泰	次女年五	堂子議
禮品官東文		農
建陽二年一月 日清用牧	四	農
大	五	農
洞上	中統第	農
菜	外	農
建陽二年一月 日清用牧	五	農

1-4. 호적표 22.5×37.5cm

1897년에 전라남도 대정군 좌면 하예리 상동에 사는 64세 김재득이 작성하여 관에 제출한 호적표이다.

2. 관직의 길로 나서다

교지는 왕이 신하에게 관직, 시호(諡號), 토지, 노비 등을 하사하면서 그 증표로 내려주는 문서이다. 오늘날의 임명장, 발령장, 자격증 등과 같은 것이다.

교지의 종류는 매우 다양한데, 관리에게 벼슬과 품계를 내리는 고신(告身)교지, 문과급제자에게 주는 흥패(紅牌)교지, 생원·진사시험의 합격자에게 주는 백패(白牌)교지, 죽은 사람에게 관직과 품계를 올려주는 추증(追贈)교지, 그 외 왕이 특별히 토지나 물건을 하사하거나 신역(身役)을 면제해주는 사패(賜牌)교지 등이 있다. 명칭은 조선 초기에는 왕지(王旨) 또는 관교(官敎)라고 하다가 세종 7년에 교지로 개칭하였다. 이후 대한제국시대에는 칙명(勅命)이라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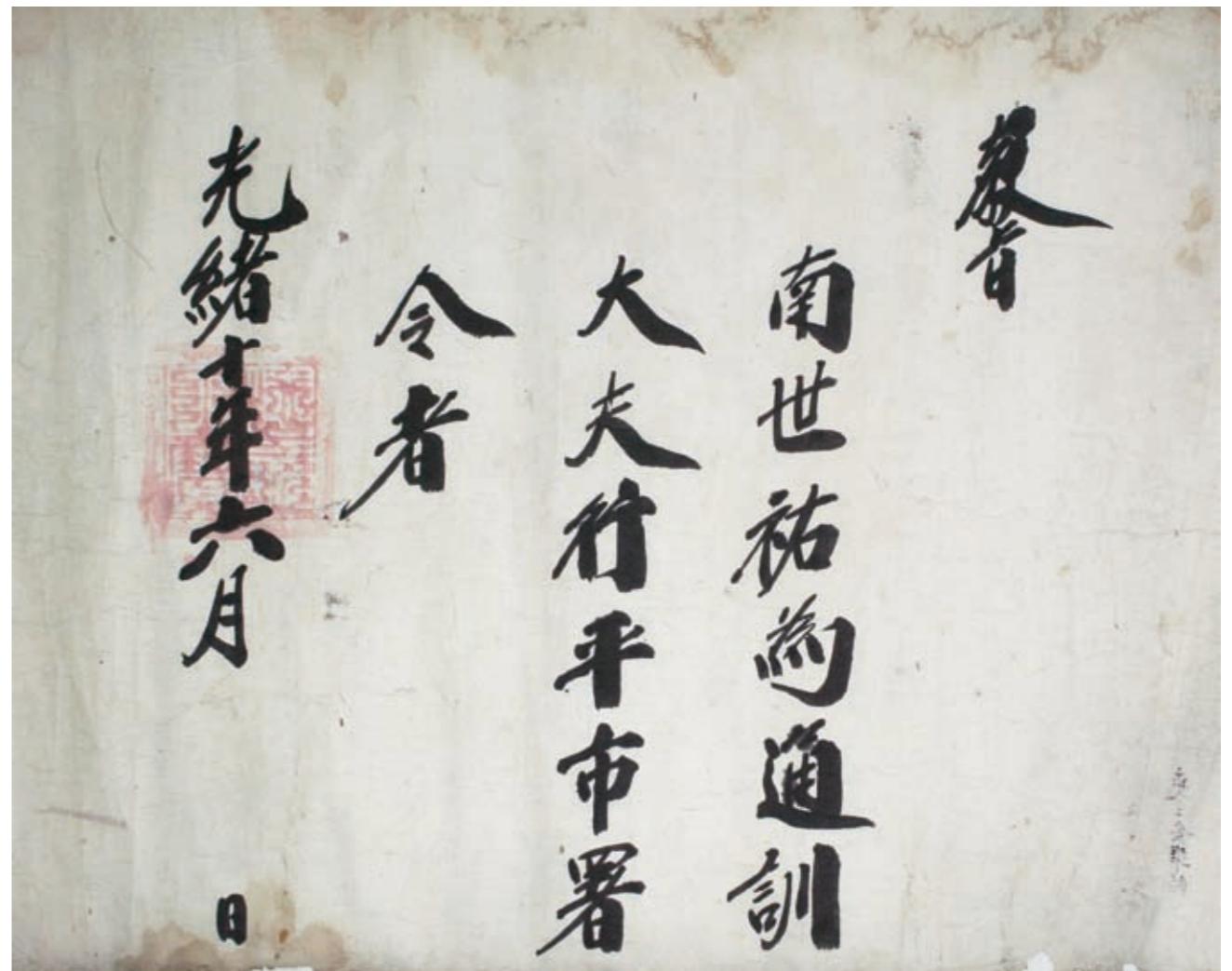
제주에서는 제주목사나 대정현감, 정의현감에 임명하는 교지들이 일부 남아있는데, 대표적으로 이형상과 이원조 목사의 교지 등이 있다. 또한 산마감목관(山馬監牧官)을 세습했던 남원읍 태흥리 경주김씨 김만일(金萬鑑) 후손 집안에도 다량의 교지가 남아있다.

망기는 직책에 합당한 인물을 천거할 때 사용하는 문서이다.

첩은 중앙 관아나 지방 감영에서 7품 이하의 관원을 임명할 때, 또는 관청의 책임자가 관속에게 명령을 내릴 때 쓰는 문서이다. 그밖에 수령이 향리나 제관을 임명할 때나, 관하의 면임, 훈장, 향교의 유생 등에게 유시할 때에도 첨을 썼다. 제주에서는 풍헌, 유향좌수, 유향별감 등 향청의 직임이나 향교 및 서원 등의 직임 임명과 관련된 첨문이 많이 남아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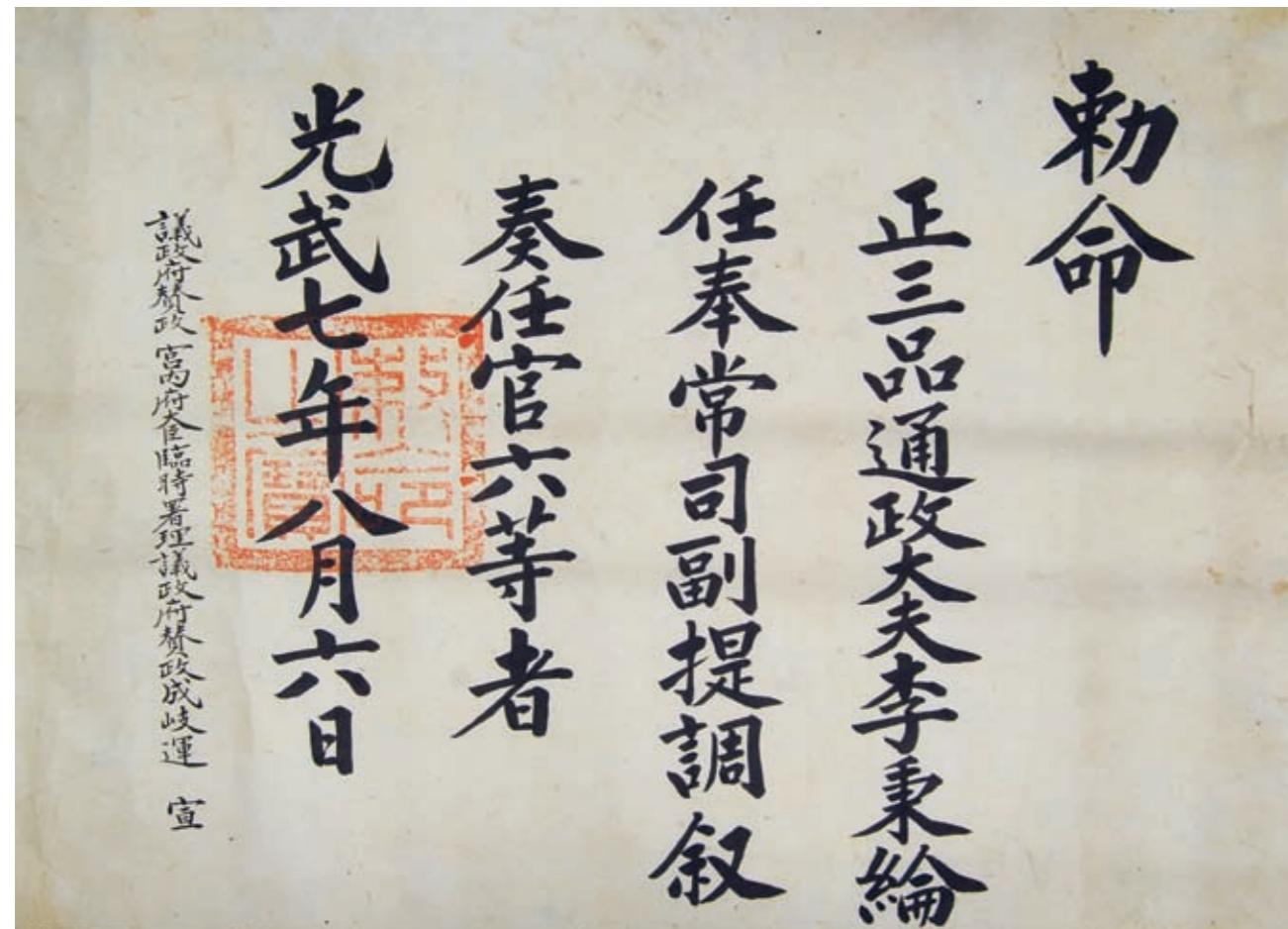
전령은 상급 관원이 하급 관원이나 백성에게 발급한 문서로, 어떤 직책에 임명하거나 혹은 명령을 내릴 때 주로 사용하였다.

조선시대 과거시험 응시자들이 제출한 답안지를 **시권**(試券), 과지(科紙) 시지(試紙) 또는 명지(名紙)라고 한다. 조선시대 과거 응시자는 답안지를 각자 지진(紙塵)에서 구입하여 시권의 오른편 상단 혹은 하단에 그의 인적사항 즉 그의 성명, 본관, 생년, 거주지, 부, 조, 증조 및 외조의 성명 등을 기록하였다. 응시자는 이를 3~4번 접어서 봉하고 그 왼쪽에 출제된 문제에 대한 답안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채점관이 제출된 답안지에 번호를 일일이 매기고 응시자의 인적사항이 기록된 오른쪽 부분을 절단한 후 채점을 하고서 그 결과를 시권에 붉은 글씨로 기록하였다. 채점은 성적에 따라 일(一), 이(二), 삼(三), 차(次), 경(更), 외(外) 등으로 매기되, 일(一)에서 차(次)까지는 다시 그 안에서 상, 중, 하로 세분하였다. 일반적으로 차상(次上) 이하면 불합격 되었으나 응시자의 성적이 나쁠 때에는 그 이하도 합격시키는 경우가 있었다. 이 시권은 후에 응시자에게 돌려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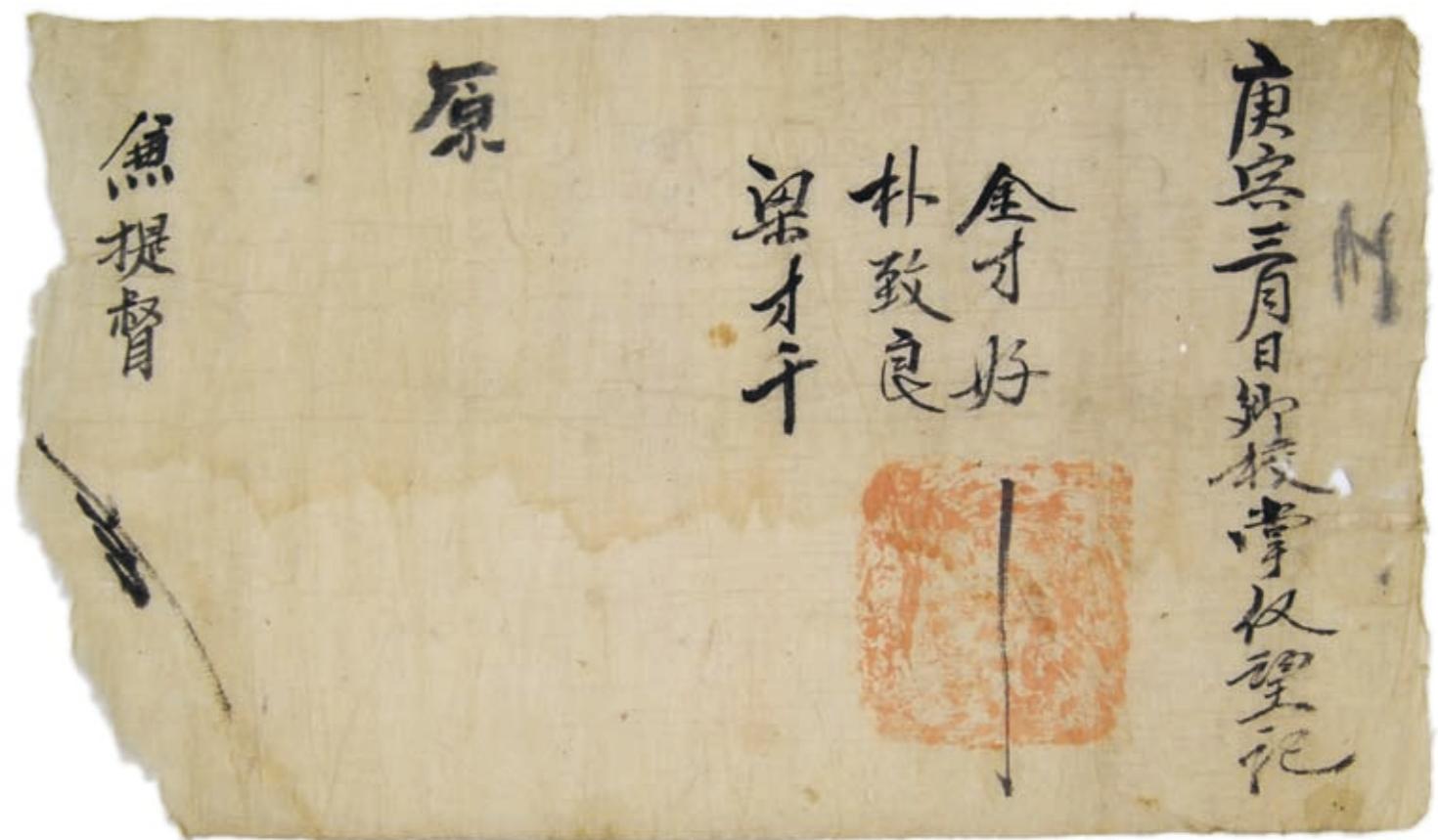
2-1. **교지** 79×65cm

1884년(고종21)에 왕이 남세우를 통훈대부 행 평시서령에 임명하면서 발급한 교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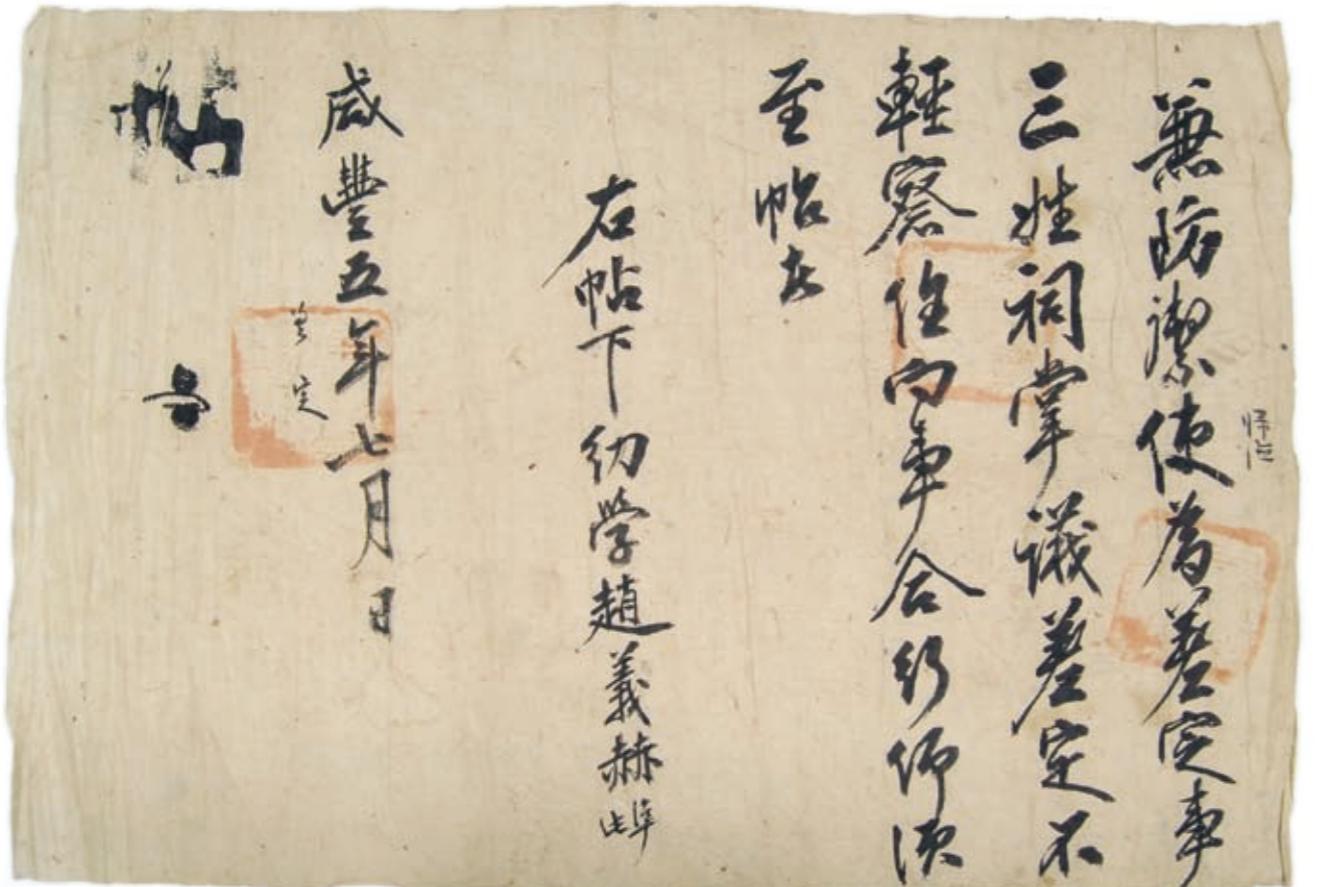
2-2. 칙명 66×50cm

1903년 8월 6일에 궁내부대신 임시서리 의정부찬정 성기운의 이름으로 이병윤을 봉상사 부제조에 임명하면서 진임관 6등으로 발급한 칙명이다.



2-3. 망기 36×20cm

경인년 3월에 겸제독이 향교 장의 후보를 천거한 망기로 김재호가 낙점되었다.



2-4. **첩** 65×50cm

1855년(철종6) 7월에 겸방어사가 유학 조의혁을 삼성사 장의에 임명하는 첨이다.



2-5. **전령** 20.5×25cm

경진년 7월에 중영에서 한량 정종준을 어변군관으로 임명한다는 전령이다. 정종준은 변막리(지금의 구좌읍 동복리)에 거주하며 아버지는 정원득이다.

嗚呼夫敦字之見於易者多矣若敦臨之敦則著之於地澤
之坤敦復之敦則揭之于雷之坤而今又以敦之一字亦言於良
之上九者其義何哉良是山之背也則是敦也有取於山之背也耶
也終也君子之所止貴其有終而其終也亦可以敦厚矣是故法良之
良是地之勢則是敦也有取於地之勢也耶噫我知之矣良是止
也終也君子之所止貴其有終而其終也亦可以敦厚矣是故法良之
敦於其止體坤之厚於有終連山之首艮者豈非取厚終之義
也歸藏之首坤者亦非取敦厚之義也歟必也純篤其志如坤之博
厚不渝其操如艮之有止則克慎厥終志愈堅於晚守日新其德事
以究則經旨不難辨矣請以白之蓋敦者篤實之謂也艮者止之意
也夫以陽剛之材居止之極能自篤實於行艮之道則若是而曰敦艮
者不其然乎何以明之艮之道惟以終始不移為貴亦以真實無偽為
尚止乎當止之處而不遷居乎當守之地而不易究厥用功莫不敦字
上做去觀其用力無不篤字中推出則有是哉敦艮之義也大較艮
之六爻皆以艮止之不得其常為憂厥或以艮其趾為戒亦或以艮其
身為言皆從一身上說去則玩其象觀其辭固可以著之心而存其
警矣是故至於上九之終特以敦艮二字叢之以為君子得艮終之眼
叢則大哉艮之道乃是萬善之所在止之道亦是百為之攸根也苟

能敦於是則甚事不做若能篤於此則何業不成此所以敦艮之道為

元吉應之而象可稱以厚終者可謂說得艮卦之義而其旨深且切矣

2-6. 시권 198×66.2cm

서울에 거주하는 22세 이홍연의 과거답안지이다. 이홍연은 생원시에서 3등 제62인의 성적을 받고 합격한 것으로 보인다. 생원과 진사시에서는 각각 100명을 선발하는데 성적은 100명을 크게 1,2,3등으로 구분하여 나눈다. 이 등위에서 다시 순위를 매겨 1등은 5명, 2등은 25명, 3등은 70명을 선발하게 된다. 따라서 이홍연이 3등 62인이면 100명 가운데 92번째로 합격한 것이 된다.

時維季春

尊體百福 僕之子太寔年既長成未

有伉儷伏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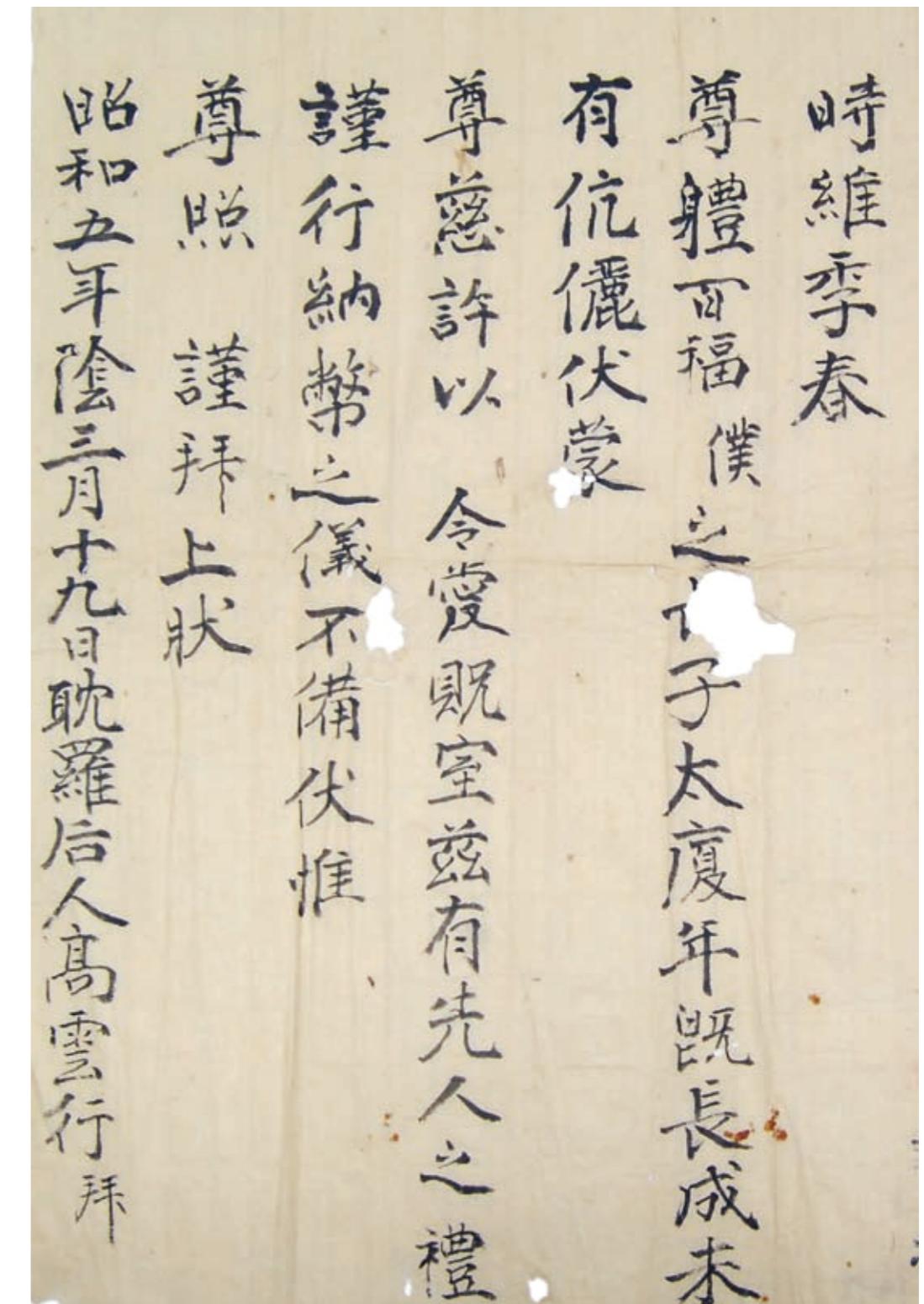
尊慈許以 令寔覲室茲有先人之禮
謹行納幣之儀不備伏惟
尊照 謹拜上狀

昭和五年陰三月十九日耽羅后人高雲行拜

3. 아내로 맞이하옵고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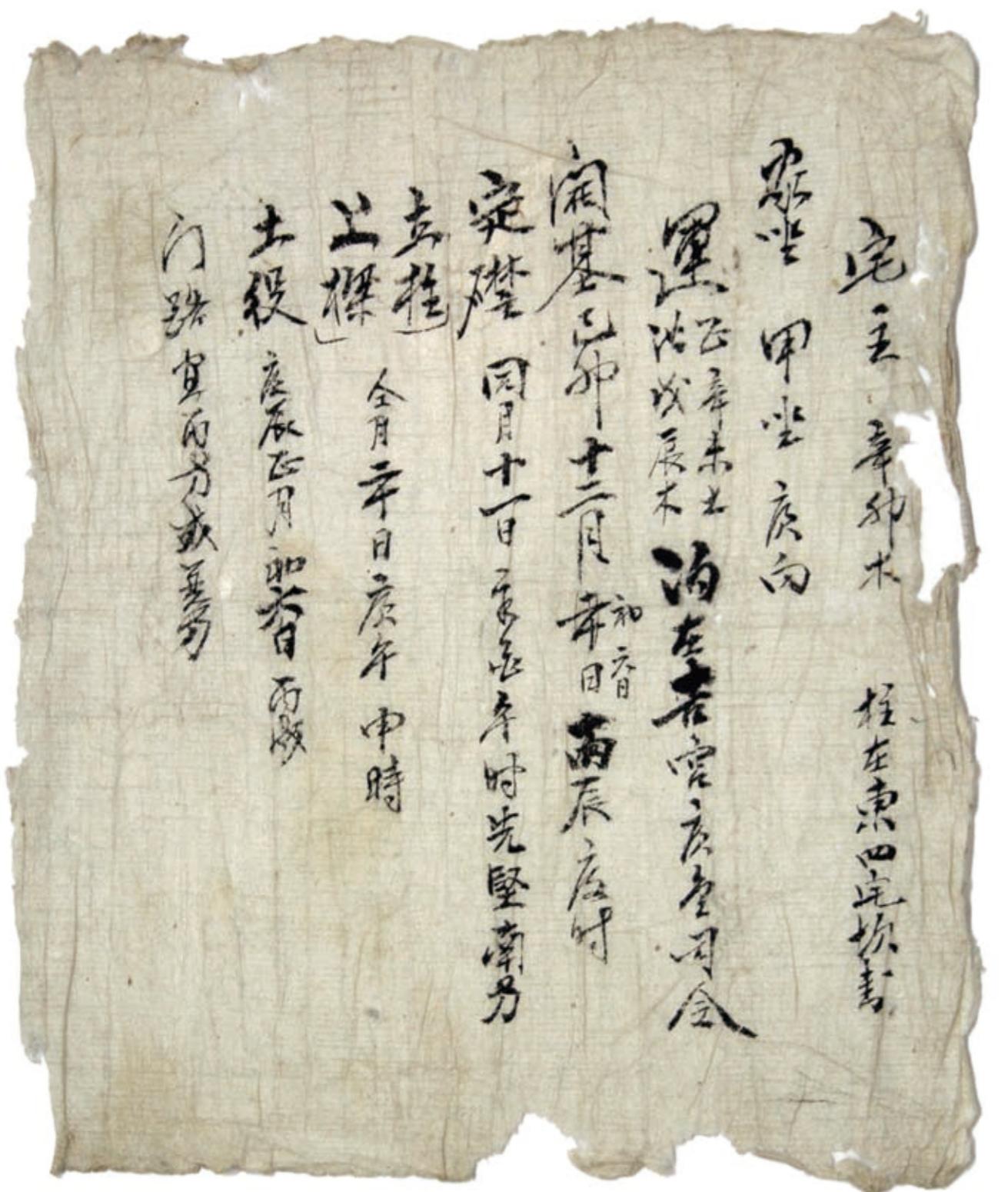
혼서는 혼인할 때 신랑 집에서 예단과 함께 신부 집에 보내는 편지이다. 예서(禮書), 예장(禮狀), 납폐서(納幣書)라고도 하며, 두꺼운 종이를 말아 간지(簡紙) 모양으로 접어서 썼다.

기조택일지는 가옥의 건축 및 수리, 이사에 앞서 좋은 날짜와 시간, 방향 등을 정하는 문서이다.



3-1. 혼서 41×44cm

1930년 음 3월 19일 탐라후인 고운행이 신부가 될 집안인 채의관 댁으로 보낸 혼서이다.



3-2. 기조택일지 21.3×24.4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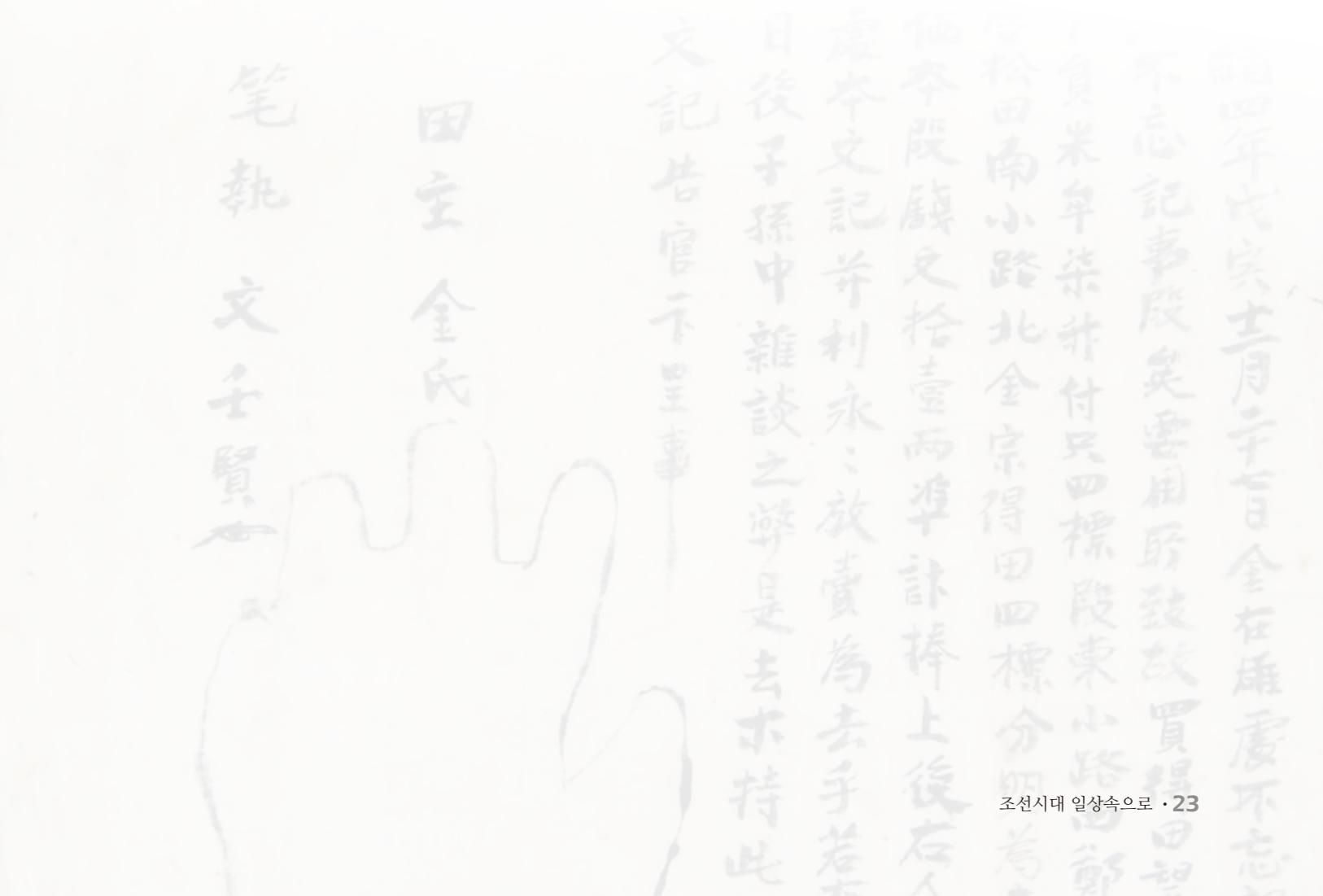
집을 짓기 전 집 주인의 사주에 맞춰, 집터의 방향, 터를 닦아 공사를 시작하는 개기(開基), 초석(礎石)을 놓는 정초(定礎), 기둥을 세우고 마룻대를 거는 입주상령(立柱上樑), 흙일을 하는 토역(土役), 출입문인 문로(門路)의 길한 날짜와 시각, 방향 등을 정하여 기록해놓은 문서이다.

4. 문서 한 장에 새겨진 선인의 경제생활

명문은 토지, 가옥, 노비 등 재산 또는 권리를 매매하거나 상환하면서 작성되는 문서이다. 매매 대상이나 종류에 따라 다양한 명칭으로 쓰이는데, 그중 토지 등을 사고파는 매매문기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 외 일정기한을 정해 돈을 빌리면서 전답을 저당 잡히는 전당문기(典當文記), 매매 당사자끼리 물물교환을 하는 상환문기(相換文記) 등이 있다. **불망기** 역시 빌려주거나 매매할 때 주고받는 증서로서 명문류 속에 포함된다. 일제강점기에는 **토지매도증서**가 사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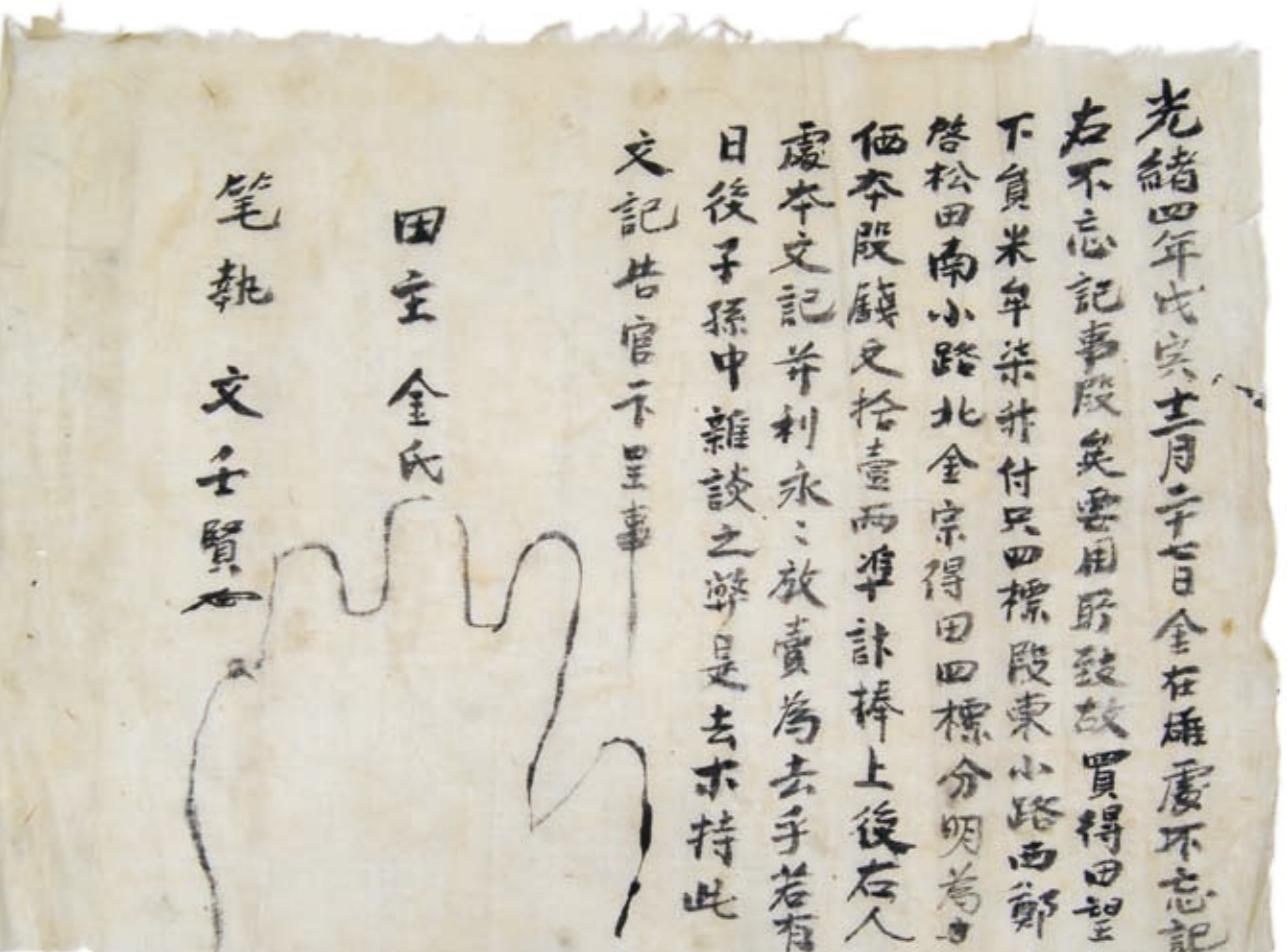
입안은 관에서 발급하는 사실증명서로서 개인의 청원에 따라 매매, 양도, 결송(決訟), 입후(立後) 등을 확인하여 이를 인증해주는 문서이다. 토지, 가옥, 노비나 그 밖의 재산의 매매, 양도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 대개 취득자가 관에 입안을 신청[所志]하면 관에서는 재주와 증인, 필집 또는 관계인의 진술을 받아 확인한 후 입안을 성급해 주었다. 이러한 절차는 조선 후기에 들어서면서 점차 해이해져 입안 발급절차가 생략되는 경우가 많았다.

제주에서는 면적 단위 용어로 논일 경우 파니(片), 배미(夜昧) 등이 쓰였고, 밭일 경우는 마지기(落只), 부치기(付只)라는 용어가 주로 쓰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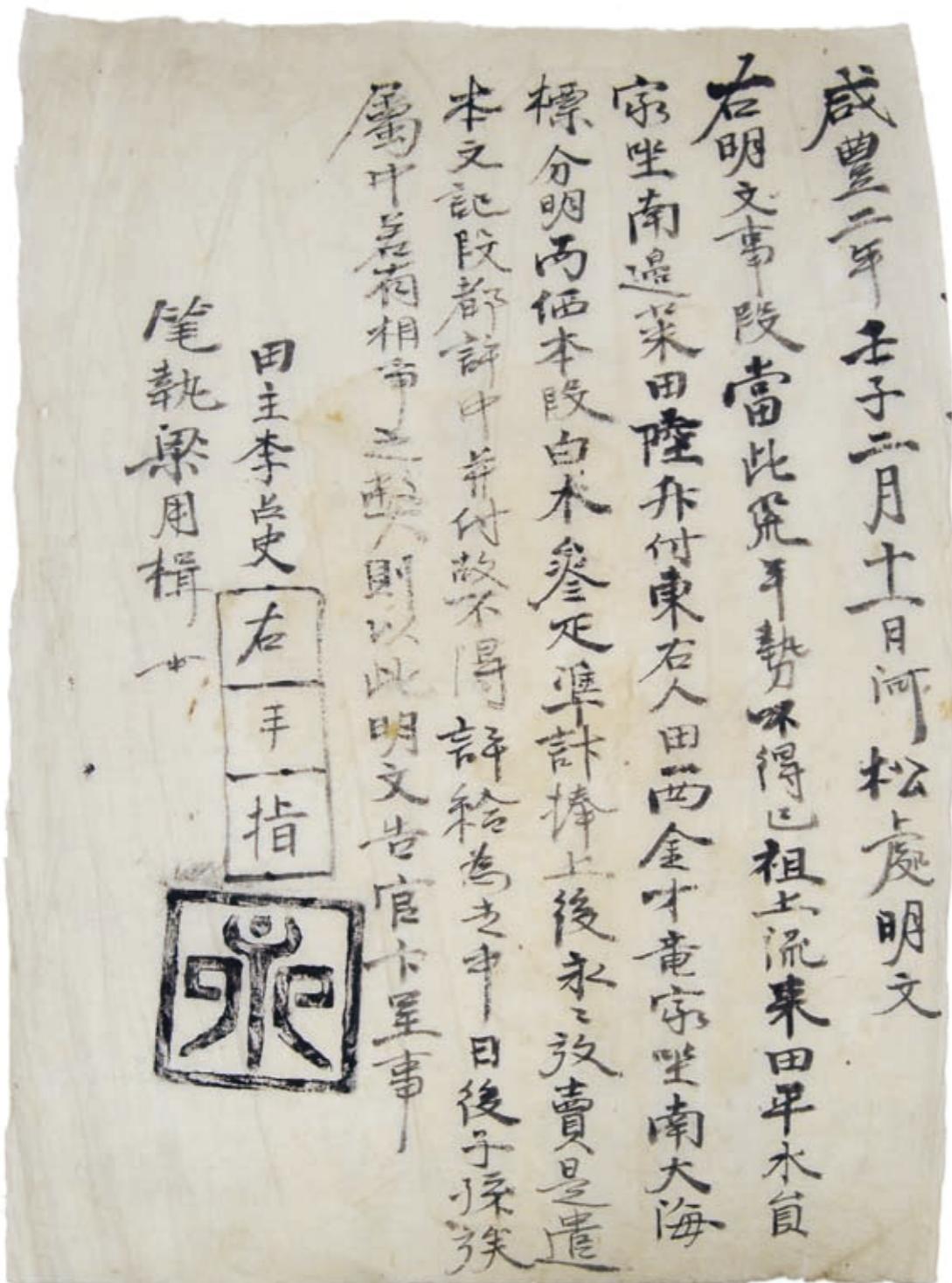
光緒四年戊寅十一月廿日金在雄處不忘記

右不忘記事段矣要用財致故買得田望
下負米牟染并付只四標段東小路西鄭
答松田南小路北金宗得田四標分明為
伍本段歸文拾壹兩准計棒上後右人
處本文記并利永放賣為去乎若有
日後子孫中雜談之弊是去亦持此
文記告官示至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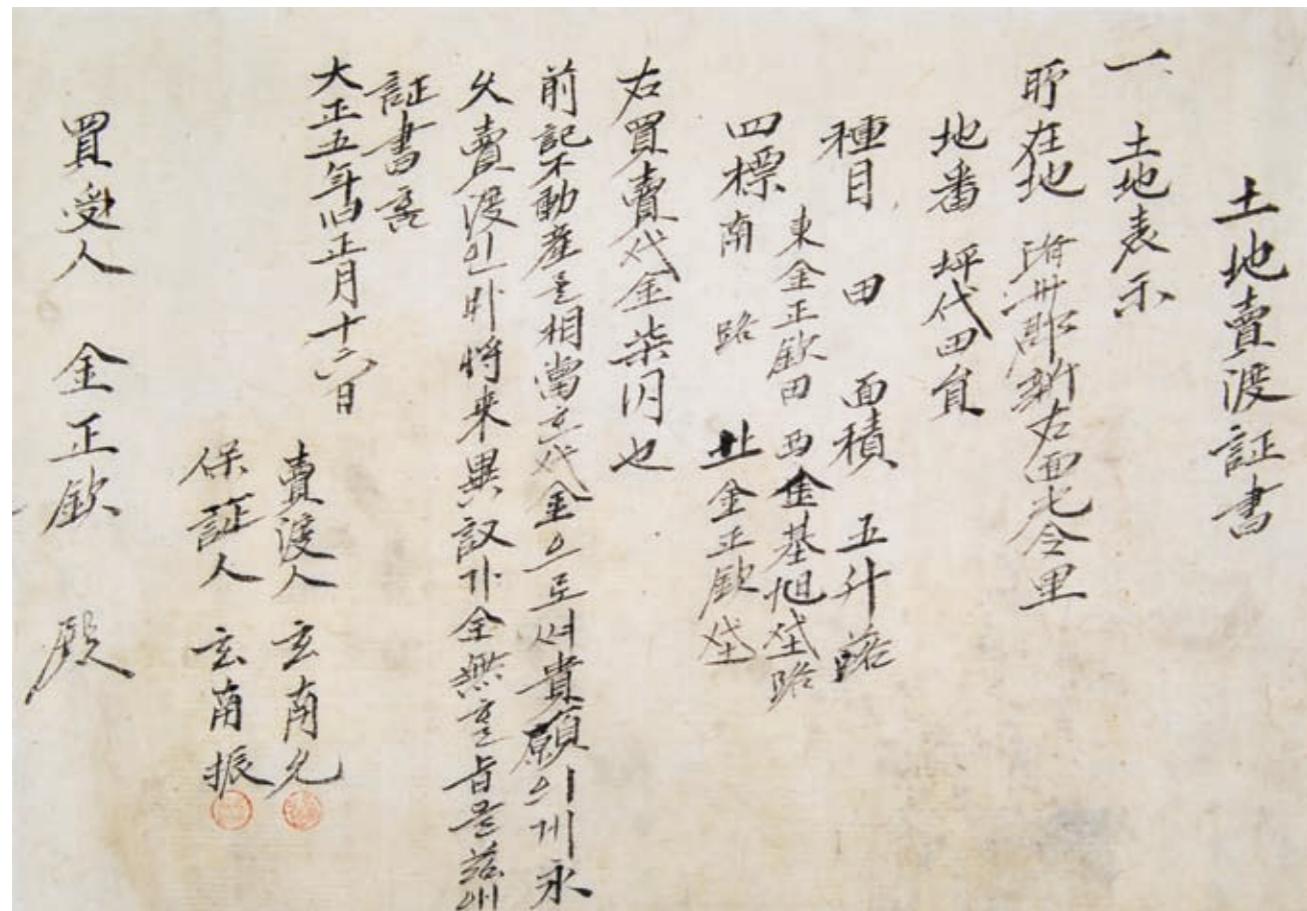
4-2. 불망기 35×27cm

1878년(고종15) 12월 27일에 밭주인 김씨가 긴요하게 쓸 곳이 있어서 김재웅에게 11냥을 받고 매득전을 팔았다는 전답매매문서이다.



4-1. 명문 34×45.5cm

1852년(철종3) 2월 12일에 밭주인 이조이가 조상으로부터 전해오던 밭을 흉년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워지자 어쩔 수 없이 하송에게 팔았다는 전답매매문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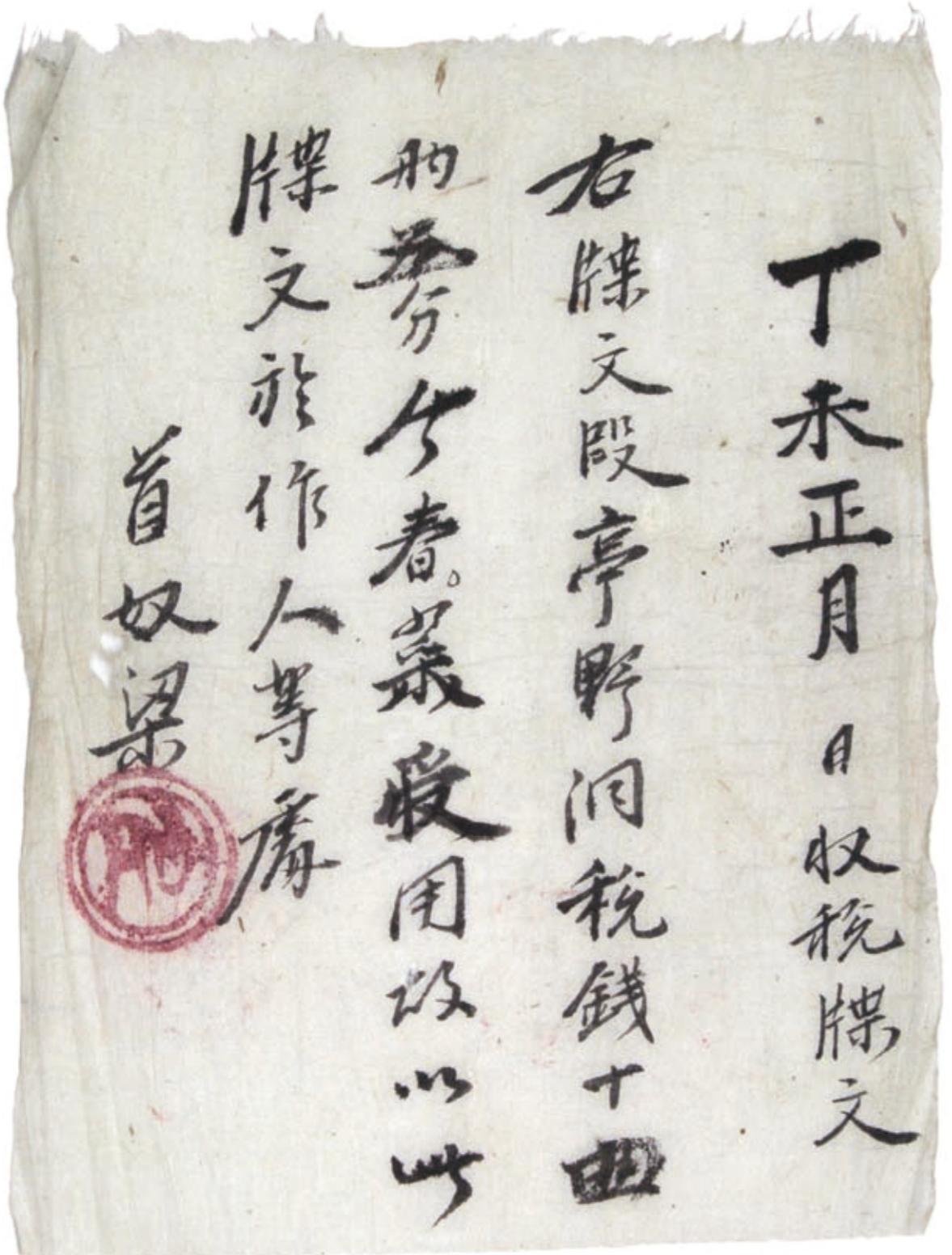
43. 토지매도증서 34.2×25cm

1916년 음력 정월 16일에 작성한 토지매도증서이다. 매도인 현남윤이 매수인 김정흠에게 제주군 신우면 광령리 밭 5되자기를 7원의 가격을 받고 영구히 매도한다는 내용이다.



44. 입안 42.5×32.8cm

1878년(고종 15) 2월에 대정군에서 만들어 발급한 입안이다. 흉년으로 어려운 난국에 진소(구휼처)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공의를 거친 후 하예리 김재득에게 45냥을 받고 면강생으로 받아줄 것을 허락한다는 내용이다.



4-5. 첨문 13.1×16.8cm

세금을 거둔 문서이다. 정미년 정월 정야동의 세전 14냥 5푼을 금년 봄에 채소로 받아셨다는 내용이다.

5. 소통과 단절 / 출륙을 허가해주소서

소지는 백성들이 관에 청원이나 탄원 및 진정할 일이 있을 때 제출하는 문서이다. 밸괄(白活 : 관아에 억울한 사정을 말이나 글로 하소연 하던 일)이라고도 한다. 백성들은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소송, 청원, 진정 등의 모든 일을 소지를 통해서 관의 판결과 도움을 요청했다. 소지를 수령이나 관계 관부에 올리면 해당 관원은 그 소지에 대한 처분을 내리게 되는데 이를 데김(頭音) 또는 제사(題辭)라고 한다. 데김은 소지의 왼쪽 하단 여백에 쓰는 것이 보통이나 여백이 모자라면 후면(後面)에 계속해 쓰기도 하고 별지를 첨부하여 쓰기도 한다. 데김을 내린 소지는 그 소지를 올린 사람에게 돌려주어 판결에 대한 증거자료로써 보존하게 했다.

소지는 백성들이 생활하면서 발생되는 여러가지 사건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매우 다양하다. 소지의 일반적인 것은 산송(山訟), 군역(軍役), 환곡 등에 관계되는 것이며, 토지와 노비의 매매를 위해서도 소지가 작성되었다. 이러한 소지는 당시의 사회상을 생생하게 반영하는 1차 자료로서 그 가치가 매우 높다.

제주의 경우는 19세기 목장토(牧場土)의 경작권을 둘러싼 소지와 산송이 많은 편이다.

출선기는 선주가 어업행위 또는 여타의 목적으로 출항하고자 했을 때, 해당 읍의 수령에게 올린 문서로 반드시 관(官)의 결재가 있어야만 출항이 가능하였다. 기재 내용은 선주와 사공의 이름은 물론 모든 승선자의 이름을 적고 있으며, 출항의 목적도 기재했다.

조선 중후기에 제주는 출륙금지령이 시행되어 제주도민이 다른 지방으로 나가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였다.『남사록』에 따르면, '을묘년(1555년) 이후부터 사선(私船)이 마음대로 출입하자, 섬 안에서 부역을 도피하는 자들이 가끔 배를 타고 육지로 도망하였다. 그 때문에 조선, 별도 두 포구에서만 배를 내보내도록 허락하였다. 배를 내보내는 날에는 목사군관 한 사람이 장부와 대조하며 점검하는데 이것을 출선기(出船記)라고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노인기는 여행허가증 또는 선박탑승허가증을 말한다.

龍潭里高雲趾

右謹陳所志事改
若非憤冤之事豈敢于
嚴威之下乎暫時造泊之際沙水洞居別將人恩請
故占山沃可論之際于萬意外有洞高與處為名者不聞真傳佩職也難破碎今此除良蒙說口不可言所謂彼此
相去葉板半步之半慘惡不已如此則死者何處其生者何以收保半者由仰陳為白圭子
問燭教是後
右漢徒致法下以簡非理行惡之習使其殘厥業破職推於是半亦俾半橫失主嘆千萬秋半為半高

行下向教是事

觀察使道主

庚午

雨中月日

下賈金進士宅奴僕伊白活

右白活白等再次白活極為惶悚是半乃疾痛之極必時父每人之常情也外都文達天本以府內營下吏移居者而其為人也為鬼為蜮凶險莫測之僅而奴妹權威左右於營邑間則因此藉勢非理賦心無所不至者矣非哉
使道主親書推諭則
他莫敢誰何也癸未上典去年七月科試觀生上京路資畜價錢三百兩右文吏從付近換用自府內渠家即出給之意者給粟錢而臨行下浦之時累々訪尋則時為逃匿矣於丈上典貪官上京費用之既以分進借出
太僕寺馬錢錢
當五千兩用之於葉錢二百兩代而至今未報則道主加邊乃為葉錢九百餘兩而此是外都一鄉數百人所共知者也大抵換錢失信則於問浮費與額出雖十倍於本錢全為徵擇於就用者自常至鄉通行之規例也而要寄
以換錢或用肆然逃匿而今不報此何以異於白晝剽奪乎况且去年九月十九日舊
使道主入島一日而來丈身之小舍廟上典時欲呈訴而來府內則文達天知其事機欲滅其口暗使票斧率無稽革數漢夜間無
意二中嘗立地政打至於死據而貨人據來李宅連日喝血鬪築放燒五刑後讓起而砍訴其冤子
使家則右文吏觸辟於刑吏使不納訴狀可謂控訴無處也此其說也
君子之方加慨嘆處而丈身之小舍一島中民望也亦不能督
捉來擊指推錢素以討權家門常誦余恩難三字而含忍至于今日何待
法庭之嚴處也伏乞
至公無私明
察理之下不委於卒官發差捉致文達天於
嚴獄之下頭質
明查果如狀辭則法其法罪其罪以
一憲官是半道債錢自年卯七月至今四十三期每兩頭還耕計五分邊並本利推給使要身上典今月內上京報價之地千萬机手教是事

兼察使道主
處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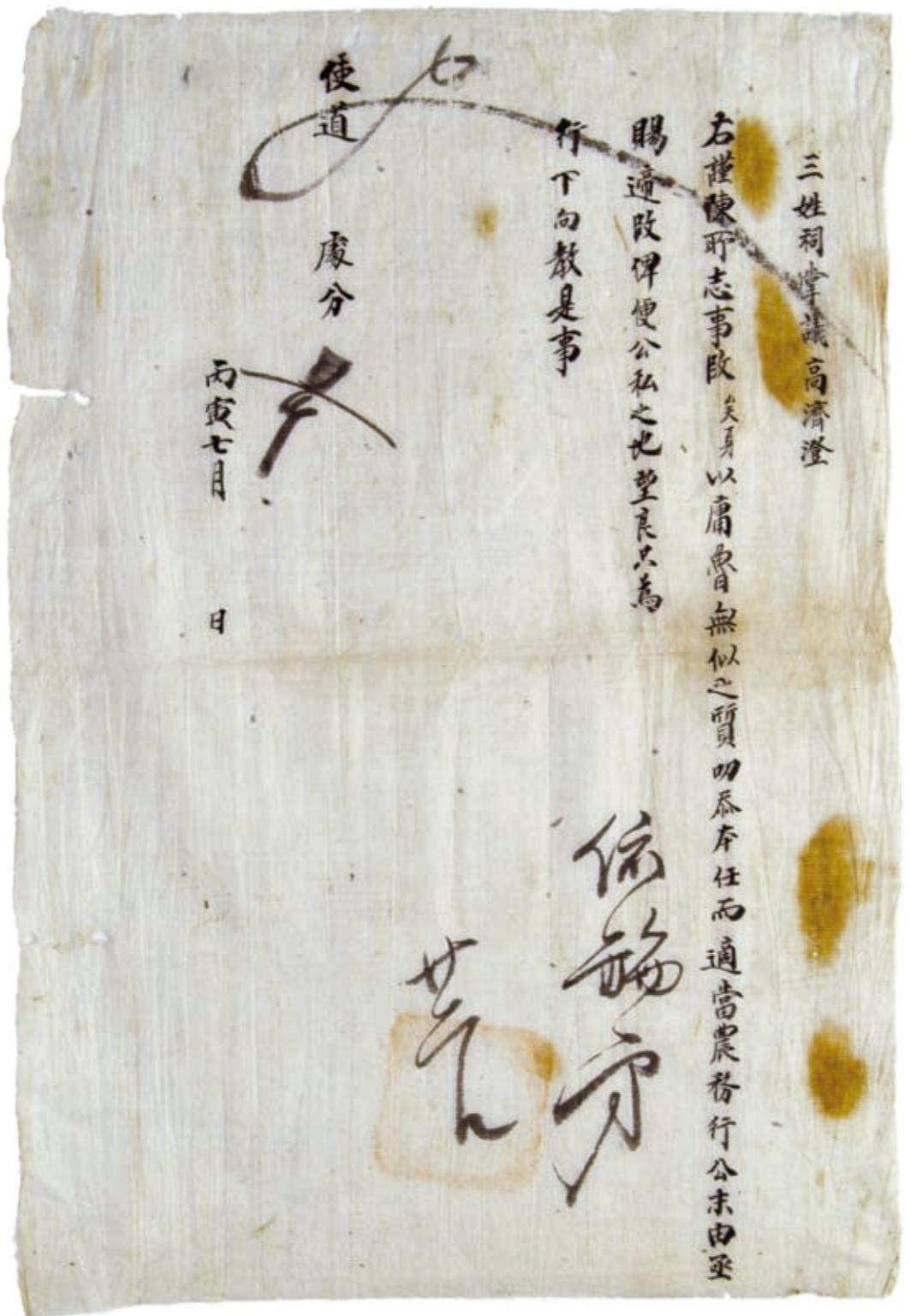
乙未三月
日白活

5-1. **발괄** 64.5×111.5cm

을미년 3월에 하귀 김진사
댁 노비 동이가 겸찰리사
도에게 올린 진정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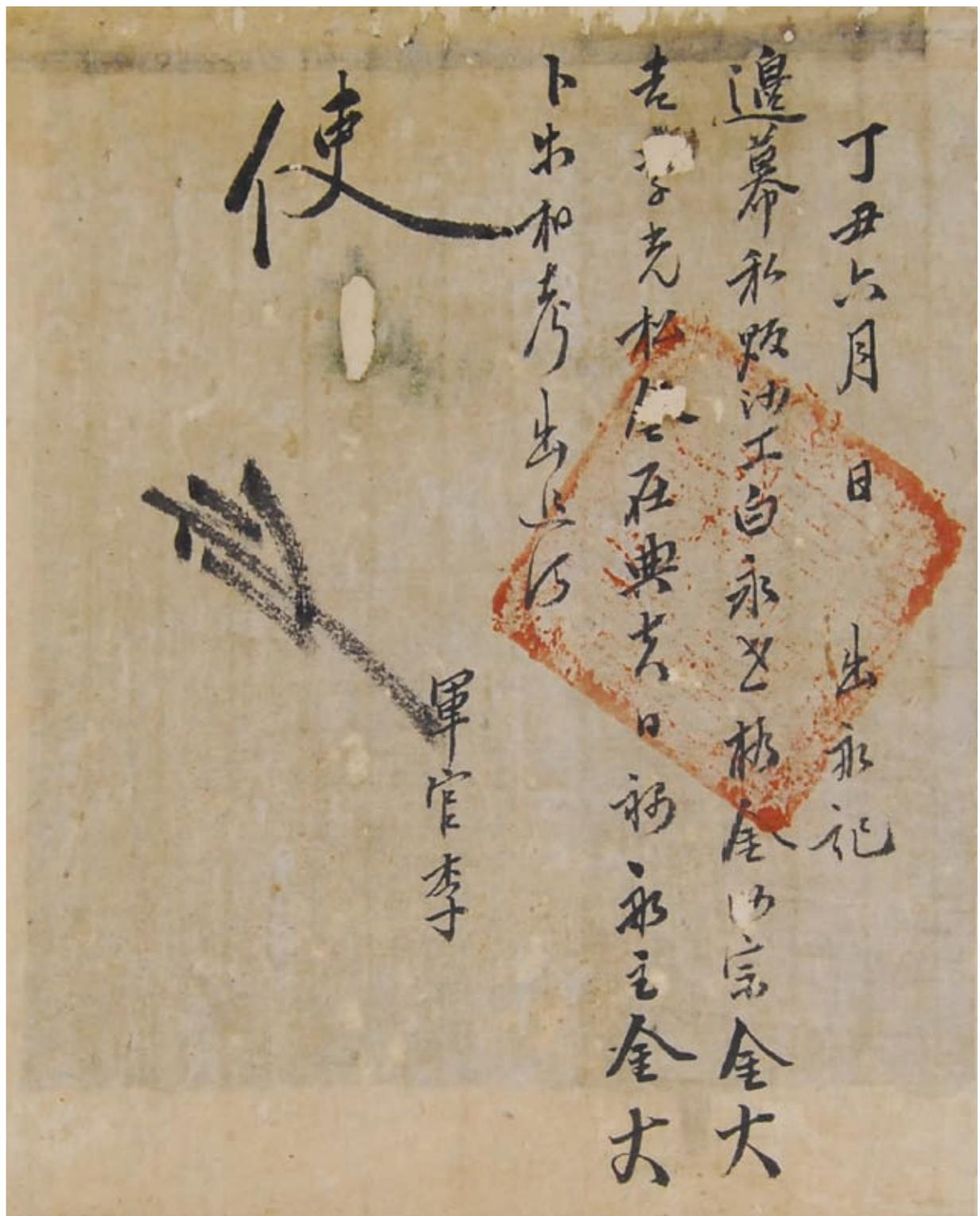
5-2-1. **소지** 38.2×60cm

병신년 12월에 용담리 고운지가 뭇자리를 정하는 과정에서 생긴 문제를 관찰사도에게 올린 소지이다.



5-2-2. 소지 37×54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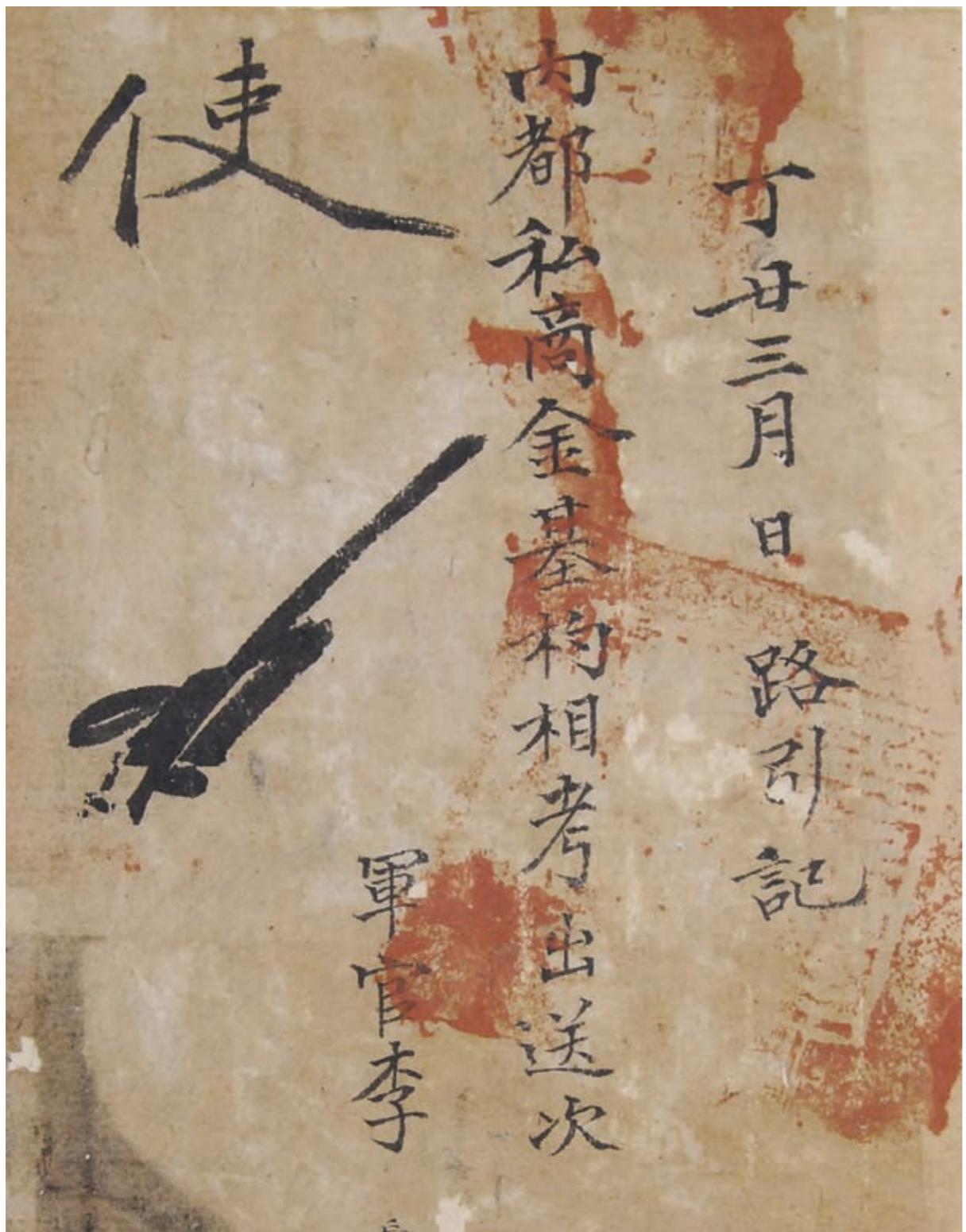
병인년 7월 삼성사 장의 고제정이 사도에게 올린 소지이다.



5-3. 출선기 30.5×33cm

정죽년 6월에 변막리 사판선의 사공 백영세, 곁꾼 김여종·김대길·이광송·김재전·부일록, 선주 김대복 등에게 준 출향허가증이다. 군관이가 작성하여 목사의 결재를 받았다.

6. 공동의 가치를 위한 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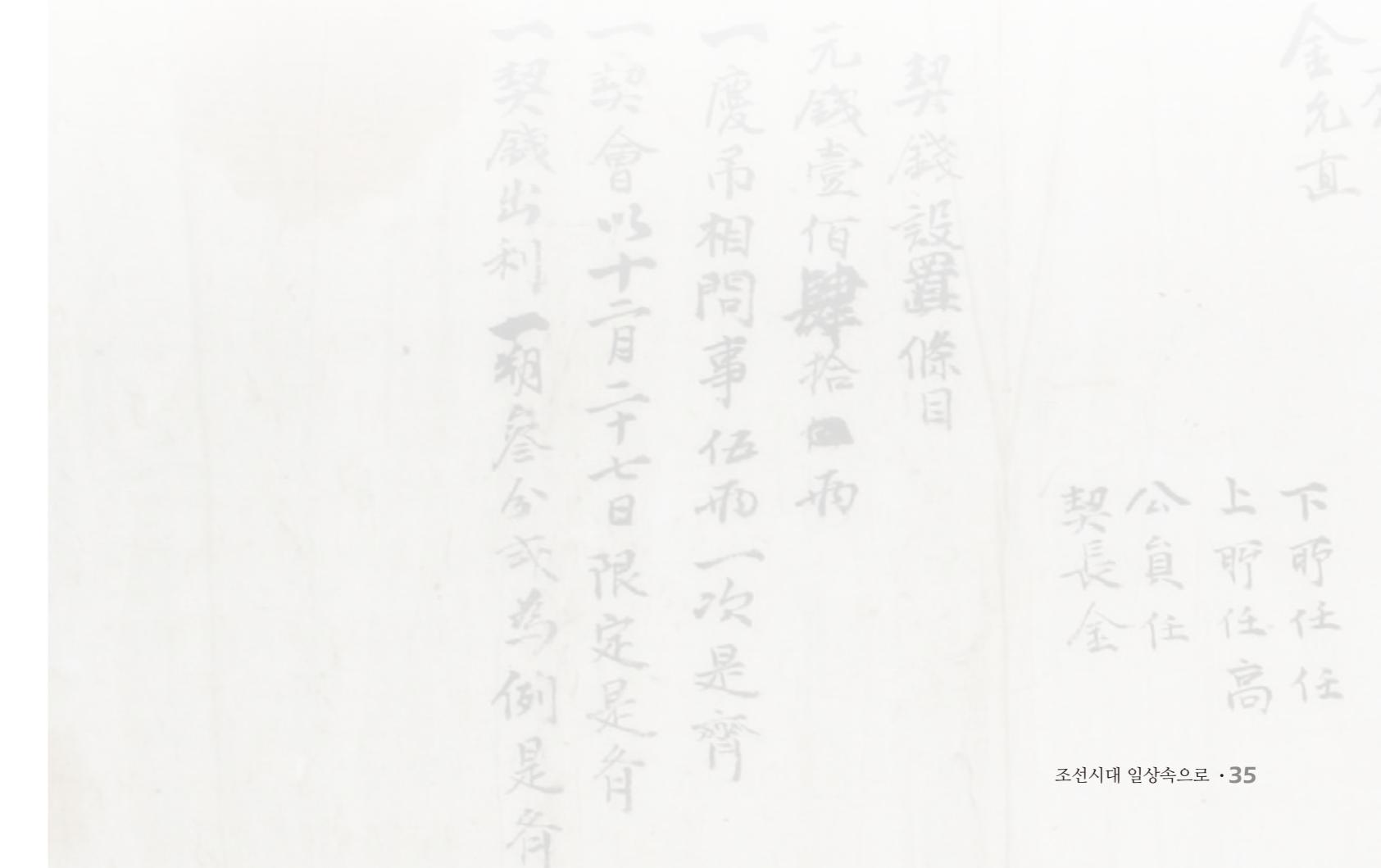


5-2-2. 노인기 29×31.5cm

정축년 3월 내도리 사상(私商) 김기표에게 발급된 여행허가증(선팔승증)이다.

계는 지역별, 모임 단위별 등 다양한 공간에서 공통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상호부조를 위하여 만든 협동조직체이다. 계의 종류로는 공동가치의 실현, 공동사업의 수행, 집단결속, 친목유지, 사회보장적인 성격에 따라 크게 공동체계, 친목사교계, 특정목적계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계 규약인 계첩을 보면 서(序), 입의(立議), 좌목(座目), 발(跋)로 구성되어 있다. 서(序)는 완의(完議)라고도 하는데 계를 설립한 유래와 목적, 역사 등을 기록했다. 입의(立議)는 절목(節目), 계헌(契憲), 범례, 조약, 규약 등으로도 불리는데 준수해야 할 항목들을 나열한 것이다. 여기에는 감독규정, 임원선출, 임원에의 예의 등이 포함되기도 했다. 좌목(座目)은 계 구성원의 명부로서 계 구성원의 신분이 양반인 경우는 태어난 해의 간지, 호, 본관 등을 기재한다. 발(跋)은 계 성립의 전말 등을 기입한 것으로 대개는 양반들의 계일 경우에 작성된다. 이 밖에도 계첩에는 계 재산의 수지, 재산목록과 소유전답 등의 기록이 있는 것도 있다.



設契條目

或問於予曰此契何為而作也予應之曰
諸益將欲與責善患難而作也曰將責善
急難之道何如鄭曰不順法度者曉諭而教
之不使得罪於鄉黨若有疾病則匍伏而救
之以待四春於鍼藥事其父老如吾之父老
視其子弟如吾子弟喪喪凡節一顧護
浪遊雜技遠々禁斷則將可為里仁之
俗庶幾為風化之漸矣豈不善豈不美哉
問者笑曰此教件事親父老親兄弟尚
可難矣况於他人乎或恐為人之恥笑也曰
否古人窮則赦之不避魏晉之厄久而赦
之豈非晏子之善乎責善者朋友也急難
者兄弟也不能責善則此非朋友之道也
且不能急難則此非兄弟之誼也而契中
諸益或為叔侄或為兄弟或為親戚或
諸條目



◀ 6-1-1. 계 79×24.5cm

계 구성원의 명단과 계전(契錢)설치의 규정을 적은 문서이다. 설치 조모의 내용을 보면, 경조사 때 5냥을 한차례 내며, 계회는 12월 27일로 한정하고, 계전이자는 매달 3푼씩 한다는 규정을 적고 있다.

▼ 6-1-2. 계 $80 \times 24.5\text{cm}$

계를 설치하며 목적과 규정을 정하여 놓은 문서이다. 조목에 보면, 질병이나 상을 당한 자를 도와주지 않고 계을리 하거나 소홀히 하는 자는 보전을 둘려주지 않고 내보내다 등의 규정을 적어놓았다.

立式

右立式殺之確我契負名下叫一金五百圓式
支出朴外花檀設備叫私用朴叫豆立式朴叫
四喪顧助時叫白米大升式巡田朴豆結
約朴叫萬若立式是違反者亡無本錢
出送刀豆結定誓

萬若契負外叫私用誓事朴有時有時是契長
及上下所住外叫問謀朴外鰐金六百圓竟
支出朴豆私用朴豆是契約義式誓

禮記元九年陰土者三十日契會付立式

唯我與饋饋押封繩外繩繩的林巡田顧助時叫
即時未納以金無豆結定誓朴叫三三攻未納者亡
無本錢出送刀豆結定誓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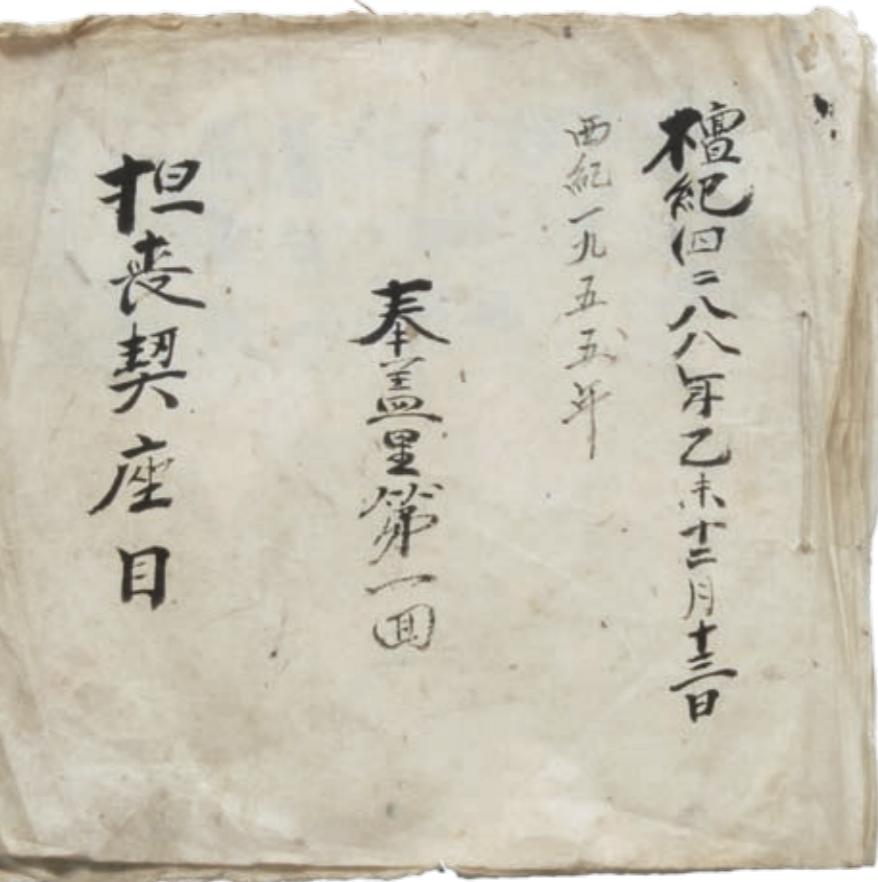
經會時未添者亡國金百多言借定誓

禮記曰八年乙未十二月吉日

西紀一九五五年

奉蓋里第一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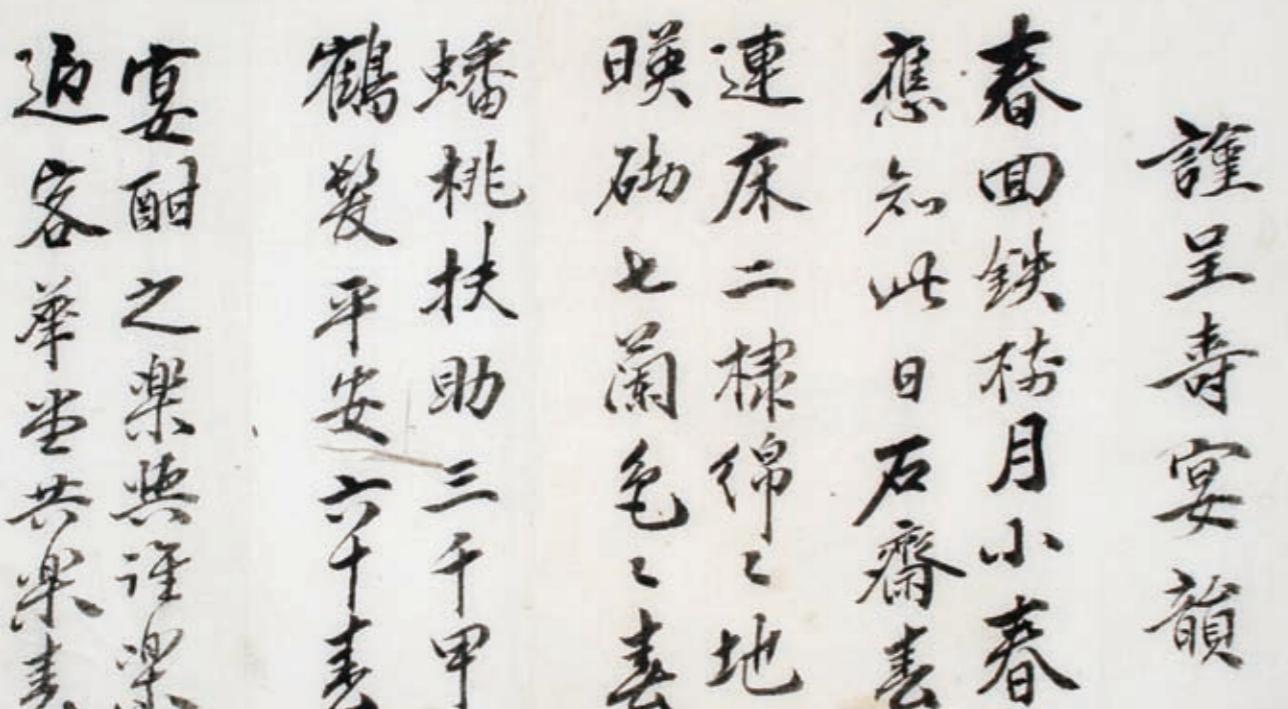
担喪契座目



6-2. 담상계 25.3×24.3cm

봉개리의 상계이다. 상계는 보통 부모, 본인, 배우자의 4상(四喪)에 필요한 경비와 노동력을 충당할 목적으로 조직된 계이다. 봉개리처럼 상계는 흔히 같은 마을의 거주자나 같은 관청의 관료들 사이에서 성행했다.

7. 수연시로 환갑잔치를 흥겹게



환갑잔치를 수연(壽宴)이라 하며 이때 장수를 축하하는 뜻에서 올리는 시를 **수연시**라 한다. 보통은 환갑을 며칠 앞두고 수연시의 운자(韻字)를 내어 친척이나 친지에게 알려 시를 짓게 하고, 잔칫날 지은 시를 발표하면서 흥을 돋우었으며, 시를 모아 '수연시첩(壽宴詩帖)'을 만들어 자손 대대로 전하기도 하였다.

7. 수연시 39.5×21cm

소철나무에 봄이 오고 10월이라
응당 이날이 석제의 봄임을 알겠네
상에 늘어선 두 당체꽃 땅에 이어있고
섬돌에 비추는 일곱 난초 색색이 봄을 맞네
신선계 복승아로 3천 회갑을 도우니
학처럼 흰머리 육십 회춘에 평안하리
이 술자리의 즐거움 누구와 더불어 즐기나
지나가던 나그네 잔치집에서 회춘을 함께 즐기네

8. 저승길에 마지막 남은 일

분재기는 재산상속 문서로, 상속을 사후에 하느냐 사전에 하느냐에 따라 **도허문**, **화회(화하)문** 등으로 나누어진다. 도허문은 재주(財主)가 살아있을 때 자녀들에게 재산을 나누어주는 분급문서이고, 화허문은 재주가 죽은 후 어머니와 자녀들이 합의를 하거나, 혹은 부모가 다 돌아가신 뒤에 자녀들의 합의에 의하여 재산을 나누는 문서이다.

분재기의 양식을 보면 재산을 상속하는 배경이 먼저 적혀있고 다음으로 자녀별 분급내용이 기재되며 말미에는 재주 및 증인의 수결(手決)이 첨부된다. 이 문서는 공신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소송의 증거자료로도 이용된다.

조선시대의 상속제도는 대개 17세기 중반을 기점으로 하여 남녀 균분상속의 관습이 점차 무너지고, 장자우대의 상속방식으로 바뀌어갔다. 그러나 제주의 경우 그러한 흐름과 상관없이 지역에 따라 다양한 분재기의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분재된 재산의 총량은 재주가 살아 있는 동안의 경제적 기반을 그대로 드러내 주기 때문에 분재기는 가족제도 사, 사회사, 경제사 등 조선시대의 시대상을 연구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겠다.

장사태일지는 장례에 관한 제반 절차를 시행하기 위해 미리 길한 시간과 방위, 날짜 등을 정하는 문서이다.

先祖五十年己卯十月初三日子女等處承許文

亦文為祀許事嗚呼家夫早夭而吾廿年逾

六十必知餘日之不足則如平流來田畠獎自

起之物各其分給平汝矣等处是矣先祖

嘆吾矣夫妻奉祭殿依吾生前舉行采勿

替者

後

長子聖集矜

一草家三間一鞭及五間一鞭基地皮半壹斗
保朴付標東桂元瓦家里田

一山負流來田皮半壹石付標東高成祿田
一後田負買得田皮半拾半付標東小路

一望田負買得田皮半柒斗付標東金基行田
一遠石負買得田皮半柒斗付標東金基行田

一旨乙負流米田貳庫金皮半肆斗付標東善善田
一後田負買得田皮半貳斗付標東長嫂叔田

一里內負買得田皮半貳斗付標東金益保田
一里內負買得田皮半肆斗付標東金德元田

一里內負買得田皮半參斗付標東門路

一各巨浪負買得田皮半肆斗付標東金德元田
一島穴負流來田栗種參半付標東長嫂叔田

一島穴負買得田栗種貳升付標東梁冊田

一長木首負買得田栗種捌升付標東梁冊田
一平木首負買得田皮半參半付標東小路

一付標東任萬八田
一東金興詩田

長女矜

一各巨浪負買得田皮半柒斗付標東梁俊成田
一里內負買得田皮半伍斗付標東咸順長田

一進己田負買得田栗種陸升付標東梁冊田
一付標東任萬八田

第二女矜

一小王伊吉負買得田皮半柒斗付標東梁俊成田
一宋屈負買得田皮半柒斗付標東李京祿田

一進己田負買得田栗種陸升付標東梁冊田
一付標東任萬八田

一未分段木頭賣皮半參半付標東金德
宗田死後家需擔當次

元財主母洪氏

門長姐長叔河

右半掌

筆執媳室孫呈奇

8-1. 화허문 138.5×37.5cm

1879년(고종16) 10월 초3일에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 흥씨 역시 60세가 넘어 살 날이 많지 않음을 알기에 유래전과 모은 재산을 장자인 성집과 딸들에게 고루 나누어준다는 내용을 적은 화허문이다.

坤化命 未詳

主葬戊戌牛金

丙午就木平泡丁入首午坐辰得子
戊青就腐木陰破除化為妙

透地戊午火就丙卦疏済山禽翼世林斗
穿山西午水坐本卦明夷山禽奎世林升
平方庚午土就歸藏卦昇亥子日官鬼

盈縮亥未土度坐星三度吉恩用火星帰垣日月
正分丙午水穴兼丁三分 升殿柳星張

山運甲戌火不火通明大吉 本山申 唐牛土 泊震官相

葬 根己巳不蒸 既滿之蹇福遠有氣動則制辛戌陰破
苗丁卯火偷 桓中不入水廉子移不害

課 乾丁卯火幅 濟之仲孚親子移之老凶
寢壬寅金蛟 乾爻孚而和親

安葬首十三日寅時初艮時下棺午前三刻

地土地因月初首丑時

穿金井同月十首未時戌時先啓午方

停取 甲方坤方

冲 丁酉辛酉葬酉生人下棺時火避則老

癸主立伏忌申酉戌方

出柩巳時午方百步外

冲乙未辛未生人

舊墓丁坐午未

繩移戌辰十首初十日辰時先破酉方

出柩巳時午方百步外

冲乙未辛未生人

坤化命壬午木 朝卯育初六日未時
壬甲未終命 己亥

生宿初八日卯时甲乙方又壬亥方
大殃申未时 大火犯之海字一千

書之天板以朱砂用之若無
砍墨唇可退

馬柱木斫之六庚天刑四字唇
之大殃时且于棺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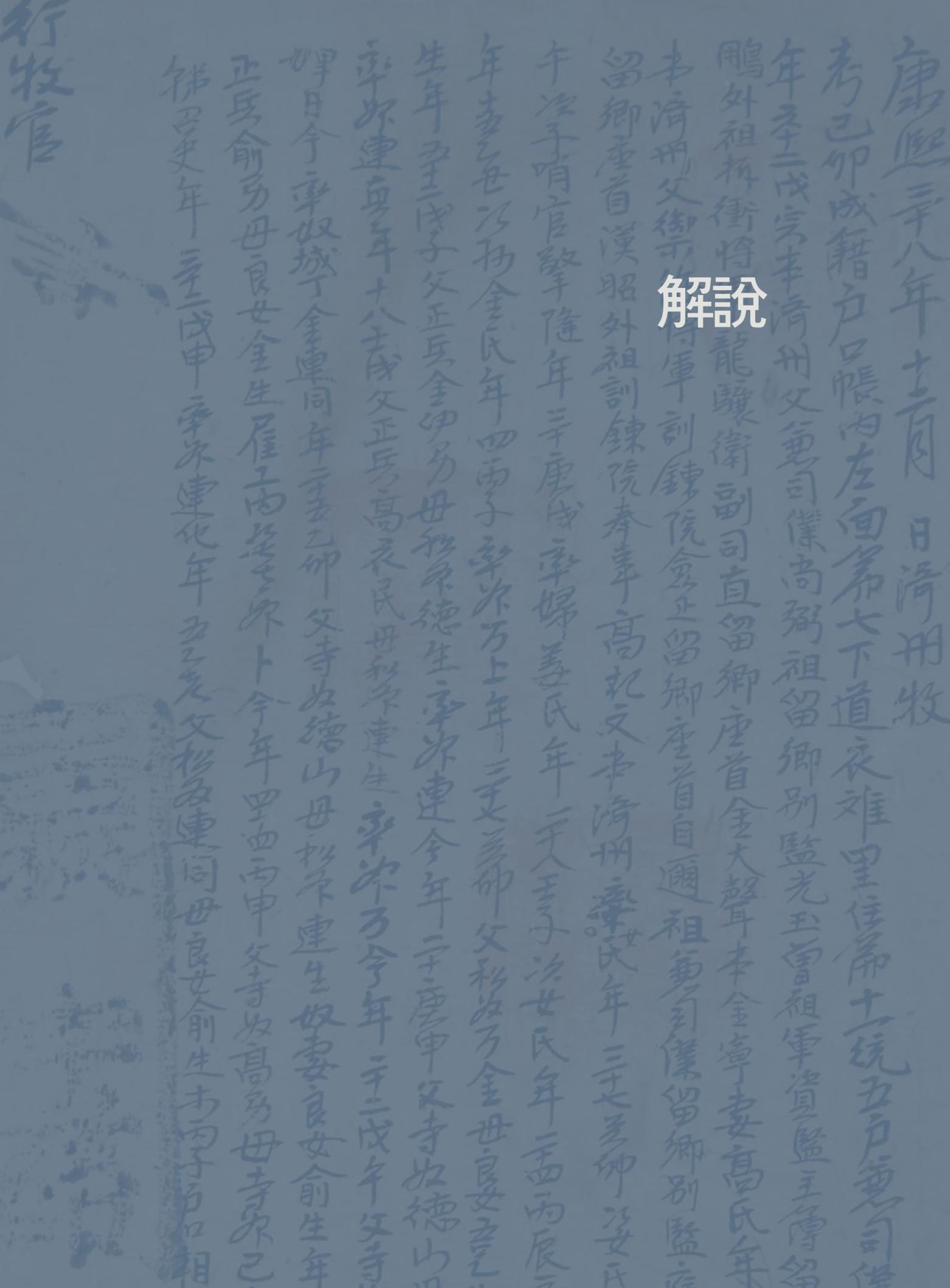
的呼壬子戊子而子娶亥等失
呼乙未庚午甲午大殃時
大變ノノ根時少變
出喪初十日辰巳卯甲乙方

8-3. 장사택일지 32.2×21cm

장례에 관한 제반 절차를 시행하기 위해 미리 길한 시간과 방위 등을 정하는 장사택일지이다. 망자는 곤화명(坤化命), 즉 여성으로 신묘년 6월 초6일 인시에 사망하였다. 내용은 조관(造棺), 대염(大殮), 출상(出喪) 등의 길한 시간과 방위를 기록해 놓고 있다.

8-3-1. 장사택일지 51.5×35.7cm

할아버지의 묘를 이장하기 위해 지관에게 받은 장사택일지이다. 산운(山運), 안장(安葬), 구묘(舊墓), 면이(繩移), 출구(出柩) 등에 관한 길한 시간과 방위를 기록해 놓고 있다.



行牧官

9. 목판



제주 옛 문서의 빗장을 열다

- 조선시대 일상 속으로

1. 여성도 호주였다.

1-1. 호적중초



濟州大靜縣下暮瑟里戶籍中草
第一戶金召史他戶去代女林召史年三十九乙未本盈州父業武仁庚祖將官
重春曾祖鎮撫樹峯外祖品官金秀甲本金海
率子作吏池祥棋年十一癸亥父作吏益大
次子作吏池祥憐年八丙寅

1812년(순조12) 대정현 하모슬리에서 작성한 호적중초이다. 제14통 1호의 내용을 보면, 호주 김조이(조이는 조부인 김조이(55세)와 아들 부부, 딸, 그 외 세 명의 아들과 5세의 손자가 함께 살고 있었다. 문서의 내용 중 특이한 점은, 둘째 아들인 동인과 장녀가 같은 해인 계해로 17세 동년이며, 셋째와 넷째 아들인 동홍과 동훈 역시 같은 해인 기사, 즉 11세로 기록되어 있다. 이 문서상 김의태의 처는 고조이 한명 뿐이므로 계해년과 기사년에 이란성 쌍둥이와 일란성 쌍둥이를 낳았다는 추측을 할 수 있겠다. 이밖에 장남 동연과 혼인한 윤조 이는 친정인 강정리 윤필특의 호에서 옮겨왔음을 말미에 기록하고 있다.

1-2. 호구단자



嘉慶二十四年正月日大靜縣己卯式戶口單字
第一左面第九下獮來里 第六統二戶前將官金宜兌年五十三丁亥本金寧
父前將官德恒
祖業武遇澤
曾祖鎮撫汝碓
外祖權知訓練院奉事姜弼周本晋州
妻高召史年五十五乙酉本濟州

父業武處堅
祖鎮撫門繼
曾祖鎮撫老職嘉善大夫嗣立
外祖品官金鳳精本金海
率子鎮撫東蓮年二十六甲寅
率婦尹召史年十七癸亥 父前城將必特
次子鎮撫東仁年十七癸亥
率女年十七癸亥
次子業武東興年十一己巳
次子業武東勤年十一己巳
率孫子用瑞年五乙亥
際
戶首金宜兌
移來尹召史十七江汀里尹必特戶來

1819년(순조19)에 좌면 하예래리 제6통 2호에 거주하는 53세 전장관 김의태가 작성하여 관에 제출한 호구단자이다. 김의태는 처 고조이(55세)와 아들 부부, 딸, 그 외 세 명의 아들과 5세의 손자가 함께 살고 있었다. 문서의 내용 중 특이한 점은, 둘째 아들인 동인과 장녀가 같은 해인 계해로 17세 동년이며, 셋째와 넷째 아들인 동홍과 동훈 역시 같은 해인 기사, 즉 11세로 기록되어 있다. 이 문서상 김의태의 처는 고조이 한명 뿐이므로 계해년과 기사년에 이란성 쌍둥이와 일란성 쌍둥이를 낳았다는 추측을 할 수 있겠다. 이밖에 장남 동연과 혼인한 윤조 이는 친정인 강정리 윤필특의 호에서 옮겨왔음을 말미에 기록하고 있다.

1-3. 준호구



康熙三十八年十二月日濟州牧
考己卯成籍戶口帳內左面第七下道衣離里住第十一統五戶兼司僕夫命賢
年六二戊寅本濟州父兼司僕尚弼祖留鄉別監光玉曾祖軍資監主簿留鄉別監大
鵬外祖折衝將軍龍驤衛副司直留鄉座首金大聲本金寧妻高氏年六十七癸酉
本濟州父禦侮將軍訓練院僉正留鄉座首自邇祖兼司僕留鄉別監應智曾祖
留鄉座首漢昭外祖訓練院奉事高起文本濟州率女氏年三十七癸卯次女氏年三十四丙
午次子哨官擎隆年三十庚戌率婦姜氏年二十八壬子次女氏年二十四丙辰率孫金氏
年十五乙丑次孫金氏年四丙子率婢万上年三十七癸卯父私奴万金母良女壹生率婢連
生年五十二戊子父正兵金伊男母私婢德生率婢連今年二十庚申父寺奴德山母私婢連生
率婢連真年十八壬戌父正兵高衣民母私婢連生率婢万令年二十二戊午父寺奴鉄明母私
婢日今率奴城丁金連同年二十五乙卯父寺奴德山母私婢連生奴妻良女俞生四十庚子父
正兵俞男母良女金生雇工內資寺婢卜今年四十四丙申父寺奴高男母寺婢己生率妾婦
婦召史年三十二戊申率婢連化年五乙亥父私奴連同母良女俞生等丙子戶口相準準給者



1699년(숙종25) 12월 제주목에서 좌면 하도 의이리에 거주하는 제11통 5호 겹사복 부명현에게 발급한 준호구이다. 부명현의 당시 나이는 62세로 처 고씨(67세)와 세명의 딸들, 아들 부부, 손녀, 그리고 37세 노비 만상을 비롯한 수명의 노비와 살고 있었다.

1-4. 호적표



全羅南道大靜郡左面下貌來里上同第五統第七戶 戶籍表 第四十七號

戶主 金才得 年六十四 本慶州 職業 農 掌議

父 品官 龍瑞

祖 品官 東文

曾祖 將官 宜泰

外祖 品官 李光殷

妻 元氏 年五十二

子 泳奎 年四

女 年八

次女 年五

現存人口 男 二口 女 三口 共合 五口

家宅 草 四間 共合 四間

建陽二年一月日郡守

1897년에 전라남도 대정군 좌면 하예래리 상동에 사는 64세 김재득이 작성하여 관에 제출한 호적표이다. 김재득은 처 원씨(52세)와 아들(4세), 딸 둘(8세, 5세)과 함께 초가 4칸에서 살고 있었다. 부모의 나이에 비해 자식들의 연령이 매우 낮은 점이 눈에 띈다.

2. 관직의 길로 나서다.

2-1. 교지



教旨

南世祐爲通訓大夫行平市署令者

光緒十年六月

1884년(고종21)에 왕이 남세우를 통훈대부 행 평시서령에 임명하면서 발급한 교지이다.



2-2. 칙명

勅命

正三品通政大夫李秉綸任奉常司副提調敘秦任官六等者

光武七年八月六日

議政府贊政宮內府大臣臨時署理議政府贊政成岐運 宣

1903년 8월 6일에 궁내부대신 임시서리 의정부찬정 성기운의 이름으로 이병윤을 봉상사 부제조에 임명하면서 진임관 6등으로 발급한 칙명이다.



2-3. 망기

庚寅三月日鄉校掌議望記

金才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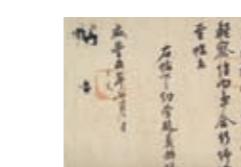
朴致良

梁才千

原

兼提督

정인년 3월에 겸제독이 향교 장의 후보를 천거한 망기로 김재호가 낙점되었다.



兼防禦使爲差定事

三姓祠掌議差定不

輕察任向事合行仰須至帖者

右帖下幼學趙義赫 準此

咸豐五年七月日

差定

帖

1855년(철종6) 7월에 겸방어사가 유학 조의혁을 삼성사 장의에 임명하는 첩이다.



2-5. 전령

傳令

閑良鄭宗俊 住邊幕 父元得

禦邊軍官差定不

輕隨行者

庚辰七月日

中營

정진년 7월에 중영에서 한량 정종준을 어변군관으로 임명한다는 전령이다. 정종준은 변마리(지금의 구좌읍 동복리)에 거주하며 아버지는 정원득이다.

2-6. 과거시험답안지



幼學李弘淵年二十二本全州居京

父嘉善大夫忠武衛副司直 商芝

祖折衝將軍行龍驤衛副護軍 時中

曾祖贈資憲大夫吏曹判書兼知義禁府事五衛都摠管行中訓大夫行南平縣監錦城鎮管兵馬節制都尉 顯應

外祖通訓大夫行義城縣令安東鎮管兵馬節制都尉金相聖本光山

易義敦艮

嗚呼夫敦字之見於易者多矣若敦臨之敦則著之於地澤之坤敦復之敦則揭口口雷之坤而令又以敦之字亦言於艮之上九者其義何犹艮是山之背也則是敦也有取於山之背也耶艮是地勢則是敦也有取於地之勢也耶噫我知之矣艮是止也終也君子之所止貴其有終而其終也亦可以敦厚矣是故法艮之敦於其止體坤之厚厚於有終連山之首豈非取厚終之義也歸藏之首坤者亦非取敦厚之義也歟必也敦篤其志如坤之博厚不渝其操如艮之有止則克慎厥終志愈堅於晚守日新其德事益善於悠允矣此上九所以敦艮爲言而六之惟此爲吉者也執此以究則經旨不難辨矣請以白之蓋敦者篤實之謂也艮者止之意也夫以陽剛之村居止之極能自篤實於行艮之道則若是而曰敦艮者不其然乎何以明之艮之道惟以終始不移爲貴亦以真實無僞爲尚止乎當止之處而不遷居乎當守之地而不易究厥用功莫不敦字上做去觀其用力無不篤字推出則有是狀敦艮之義也大較艮之六爻皆以艮止之不得其常爲憂厥或以艮其趾爲戒亦或以艮其身爲言皆從一身上說去則玩其象觀其辭固可以着之心而存其警矣是故至於上九之終持以敦艮二字發之君子得艮終之眼嗚呼厥有攸止莫善於固守厥有攸守莫善於厚終止於至當止地而不固厥守則其可謂能敦者耶止於至善之道而不厚厥終則其可謂能止者耶止而能守守而能敦然後其終可保而其吉自來矣二字經訓至斯而益驗矣噫其德也剛則其止也善則其善也自厚厚之於始終而敦於艮止則可謂德之體而善之至也凡百君子盍亦克念於此而敦其止也吁謹義

서울에 거주하는 22세 이홍연(李弘淵)의 과거답안지이다. 이홍연의 4조를 보면, 아버지가 상지, 할아버지가 시중, 증조가 현응, 외조가 김상성이이다. 이홍연은 생원시에서 3등 제62인의 성적을 받고 합격한 것으로 보인다. 생원과 진사시에서는 각각 100명을 선발하는데 성적은 100명을 크게 1,2,3등으로 구분하여 나눈다. 이 등위에서 다시 순위를 매겨 1등은 5명, 2등은 25명, 3등은 70명을 선발하게 된다. 따라서 이홍연이 3등 62인다면 100명 가운데 92번째로 합격한 것이 된다. 답안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돈간에 대한 주역 논

아아! 「돈(敦)」이라는 글자가 「역(易:주역)」에 보이는 경우는 많다. 돈임(敦臨:돈독하게 임함)의 「敦」은 지택괘(地澤卦)의 곤(坤:上六 敦臨吉 无咎. 象曰 敦臨之吉 志在內也.)에 나타나고敦復의 「敦」은 지뢰괘(地雷卦)의 곤(坤:六五 敦復 无悔. 象曰 敦復无悔 中以自考也.)에 게시되어 있다. 그런데 이제 또 돈(敦)의 한 글자가 또 간(艮:重山艮卦)의 上九(上九 敦艮 吉)에 언급하고 있으니 두려움을 본받아 끝마침을 두텁게 하여야 한다. 重山괘의 첫머리에 艮을 어째서 마침을 두텁다는 뜻(象曰 兼山艮 君子以思不之其位)에서 취하지 않았을까. 歸藏괘(重地坤卦의 뜻)의 첫머리에 곤을 어째서 두텁다는 뜻(象曰 地勢 坤 君子 以 厚德載物)에서 취하지 않았을까. 반드시 그 뜻의 순수하고 독실함을 坤의 삼가 두텁게 함과 같아야 하고 그 지조를 변하지 않음은 艮이 멈춤을 지님과 같이 하면, 그 마침을 신중히 할 수 있을 것이며, 뜻을 늘그 막까지 지킴에 더욱 굳게 할 것이며, 날마다 그 덕을 새롭게 일삼는데 오래도록 더 잘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괘의 上九에 敦艮(도타웁게 멈춤)이라고 말하고(上九 敦艮吉) 육효(六爻)가 오직 이것을 吉하다고만 하였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탐구하면 경서의 뜻을 변론하기는 어렵지 않다. 그것을 진술하고자 한다.

무릇 敦이라는 것은 도타움을 말하며 艮은 가다가 정지하는 뜻이다. 강하고 튼튼한 재능으로 아주 멈추어 산다면 艮을 행하는 도리에 스스로 도타울 것인 즉, 이와 같다면 「敦艮」(멈춤에 도탑다)이라 말할 것이니, 그렇지 않다면, 무엇으로 艮의 도리를 밝히겠는가 오직 처음부터 끝까지 옮겨 다니지 않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또한 진실되고 거짓없음을 존중할 뿐이다. 당연히 멈춰야 할 곳에 멈춰 당연히 지켜야 할 처지에 옮겨 살지 않음은 쉽게 추구할 수 없는 일이다. 그 능력으로 敦字상에서 만들어 가지 않을 수가 없으며, 그 노력함을 보면 篆字 중에서 추출되지 않음이 없으니, 여기에 敦艮(멈춤을 도탑계 함)의 뜻이 있다. 艮괘의 육효(六爻)를 크게 비교하면 모두가 멈춤이 그 평상을 얻지 못할까를 걱정하고 있다. 거기에는 발꿈치에 멈춤을 경계하거나, 혹은 몸에 멈춤을 언급하거나 하여, 모두가 한 몸뚱이에서 설명하여 가고 있는 즉, 그 모양새를 살피면서 그 언사는 참으로 마음에 와 닿아 거기에 경계를 남길 만하다. 이런 까닭에 上九의 끝에 이르기까지 특히 敦艮 두 字의 나타냄을 군자가 그쳐 멈춤을 눈으로 보고 가슴에 저장한다고 여기면 큰 것이다. 멈춤의 도리는 바로 모든 善에 존재하는 것이고, 멈춤의 도리 역시 백가지 행위의 근본에 이르는 것이다. 진실로 여기에 도타울 수 있으면, 무슨 일 이든 맡지 못하겠는가. 이것이 敦艮의 도리를 원래 吉함으로 삼은 근본 뜻이다. 象에서 마침을 두터이 말한 것은 艮괘의 뜻을 설명하여 납득했다고 할 수 있으니, 그 요지가 깊고도 절실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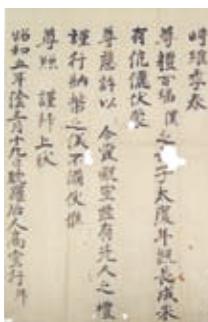
아아! 그 멈춤에 이른 것을 굳게 지킴보다는 더 좋은 것이 없으며, 그 지킴에 이른 것은 두터이 함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 마땅한 경우에 마치고 멈춤에 있어, 그 지킴을 굳게 하지 못하면 어찌 도탑계 할 수 있다고 하겠는가. 至善의 도리에 멈춰도 그 마침을 두터이 하지 못하면 어찌 멈출 수 있었다고 하겠는가. 멈추면서 지킬 수 있고, 지키면서 도타울 수 있는 다음에야 그 마침이 보장되고, 그 길(吉)함은 저절로 찾아오는 것이다. 두 字(敦艮)의 易經의 가르침이 여기에 이르렀음을 더욱 정확하게 된다.

아! 그 덕은 굳센 것이 그 멈춤이고 저절로 善한 것이 그 멈춤이다. 善하면 그 善은 저절로 두터웁다. 두터움이 처음부터 끝까지 가면 멈춤에 도타워지는 즉 德의 體가 善에 이른다고 할 수 있다. 무릇 모든君子들은 어찌 또한 이것을 생각하고 그 멈춤을 도타웁게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삼가 논한다.



3. 아내로 맞이하옵고저

3-1. 혼서



時維季春
尊體百福僕之次子太廈年既長成未
有伉儷伏蒙
尊慈許以 令愛覲室茲有先人之禮
謹行納弊之儀不備伏惟
尊照 謹拜上狀
昭和五年陰三月十九日耽羅后人高雲行 拜
蔡議官 宅 下執事
上狀

1930년 음 3월 19일 탐라후인 고운행이 신부가 될 집안인 채의관 댁으로 보낸 혼서이다. 내용은 '때는 3월이온데 존체만강 하시옵니까. 저의 차남 태하가 이미 성장하여 배필이 없었더니 어른께서 자혜롭게도 귀중한 따님으로 하여금 아내로 맞게 해주시니 이에 조상의 선인의 예에 따라 삼가 납폐의례를 행하오나 예를 갖추지 못합니다. 삼가 절하며 글을 올리오니 어른께서 살펴보소서'이다.

3-2. 기조택일(起造擇日) 문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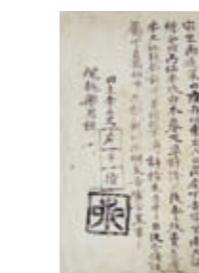


宅主 辛卯木 柱在東四宅坎書
家坐 甲坐庚向
運 正辛未土 洪戊辰木 泊左吉宮庚金司令
開基 己卯十二月初六日丙辰庚時
定礎 同月十一日辛酉午時先堅南方
立柱 上樑 同月二十日庚午申時
土役 庚辰正月初六日丙戌
門路 宜丙方或巽方

집을 짓기 전 집 주인의 사주에 맞춰서, 집터의 방향, 터를 닦아 공사를 시작하는 개기(開基), 초석(礎石)을 놓는 정초(定礎), 기둥을 세우고 마룻대를 거는 입주상량(立柱上樑), 흙 일을 하는 토역(土役), 출입문인 문로(門路)의 날짜와 시각, 방향 등을 정하여 기록해놓은 문서이다. 집의 방향은 갑좌경향(甲坐庚向), 즉 갑방을 등지고 경방을 향한 좌향이며, 터닦이는 기묘년 12월 초5일 병진 경시이다. 입주상량은 동월 20일 경오 신시이며 흙일은 경진 정월 초6일이 길하다고 하였다.

4. 문서 한 장에 새겨진 선인의 경제생활

4-1. 명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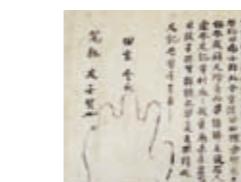


咸豐二年壬子二月十一日河松處明文

右明文事段當此荒年勢不得已祖上流來田平水員家坐南邊菜田陸升付東右人田西金才竇家座南大海標分明而價本段白木參疋準計捧上後永永放賣是遣本文記段都許中并付故不得許給爲去乎日後子孫族屬中若有相爭之弊則以此明文告官卞呈事
田主 李召史 (右手指)
筆執 梁用楫

1852년(철종3) 2월 12일에 밭주인 이조이가 조상으로부터 전해오던 밭을 흥년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워지자 어쩔 수 없이 하송에게 팔았다는 전답매매문서이다. 밭은 평수원에 있는 집에서 남쪽에 위치한 채소밭 6되 부치기로 백목(白木) 3필을 받고 팔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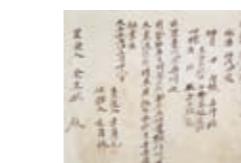
4-2. 불망기



光緒四年戊寅十二月二十七日金在雄處不忘記

右不忘記事段矣要用所致故買得田望下員米牟柒升付只四標段東小路西鄭啓松田南小路北金宗得田四標分明爲價本段錢文拾壹兩準計捧上後右人處本文記并利永永放賣爲去乎若有日後子孫中雜談之弊是去等持此文記告官卞呈事
田主 金氏
筆執 文壬賢

1878년(고종15) 12월 27일에 밭주인 김씨가 긴요하게 쓸 곳이 있어서 김재웅에게 11냥을 받고 매득전을 팔았다는 전답매매문서이다. 밭은 망하원에 있는 미모(米牟) 7되 부치기로 위치는 동쪽에 작은 길이 있고 서는 정계송 밭, 남은 다시 작은 길이고, 북은 김종득 밭이 있는 곳이라고 하였다.



4-3. 토지매도증서

土地賣渡證書

- 土地表示

所在地 濟州郡新右面光令里

地番 坪代田員

種目 田 面積 五升落

四標 東金正欽田 西金基旭垈路 南 路 北金正欽垈
右賣買代金柒圓也



前記不動産를 相當한 代金으로써 貴願의게 永久賣渡인바 將來異議가 全無를 言를
茲에 證書함
大正五年舊正月十六日
賣渡人 玄南允
保證人 玄南振
買受人 金正欽 殿

1916년 음력 정월 16일에 작성한 토지매도증서이다. 매도인 현남윤이 매수인 김정흠에게 제주군 신우면 광령리 밭 5되지기 7원의 가격을 받고 영구히 매도한다는 내용이다. 밭의 위치는 동으로 김정흠의 밭이 있고 서쪽으로는 김기옥의 집터길, 남은 길이며, 북은 김정흠의 집터이다.

4-4. 입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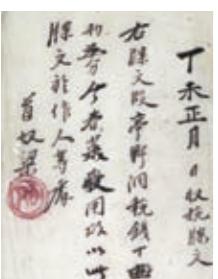


光緒四年二月日大靜郡立案

右立案爲成給事本邑以其弊局加值荒年設賑所入措賑無路故收議邑下則俱曰賑資免講
自有已例是如公議歸一故考已例從公議下現金才得處錢文肆拾伍兩納禮補用後許付免
講生爲遣憑後次合行立案者
使

1878년(고종15) 2월에 대정군에서 만들어 발급한 입안이다. 흉년으로 어려운 난국에 진소(구휼처)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공의를 거친 후 하예리 김재득에게 45냥을 받고 면강생으로 받아줄 것을 허락한다는 내용이다.

4-5. 첨문



丁未正月日收稅牒文

右牒文段亭野洞稅錢十四兩五分今春菜受用故以此牒文於作人等處
首奴梁

정미년 정월 세금을 거둔 문서이다. 내용은 '위 첨문은 정야동의 세금 14냥 5푼을 금년 봄에 채소로 받아서 썼기 때문에 이 첨문을 소작인들에게 처리함. 수노 양'이다.

5. 소통과 단절 / 출륙을 허가해주소서

5-1. 발괄



下貴金進士宅奴僮伊白活

右白活白等再次白活極爲惶悚是乎乃疾痛之極必呼父母人之常情也外都文達天本以府內營下吏移居者而其爲人也爲鬼爲蜮兇險莫測之漢而妓妹權戚左右於營邑間則因此藉勢非理賊心無所不至者矣非我使道主親查推給則

他莫敢誰何也奴矣身上典去辛卯七月科試觀光次上京路費番價錢二百兩右文吏從付近換用自府內渠家卽出給之意書給票紙而臨行下浦之時累累訪尋則暗爲逃匿矣奴矣身上典貧橐上京資用乏絕以五分邊債出太僕寺馬契錢

當五千兩用之於葉錢二百兩代而至今未報則邊上加邊乃爲葉錢九百餘兩而此是外都一鄉數百人 昭所共知者也大抵換錢失信則於間浮費與殖出雖十倍於本錢全爲徵捧於執用者自京至鄉通行之規例也而右文哥

以換錢意執用肆然逃匿尙今不報此何以異於白晝剽奪乎況且去辛卯九月十九日舊使道主入島之日而奴矣身之小舍廊上典將欲呈訴而入來府內則文達天知其事機欲滅其口暗使渠弟率無賴輩數漢夜間無

意之中忽地毆打至於死境而貧人擔來本宅連日嘔血醫藥救瘳五朔後纔起而欲訴其冤于使家則右文吏聯臂於刑吏使不納訴狀可謂控訴無處也此其觀風君子之另加慨嘆處而奴矣身上典一島中民望也 岂不能私自

捉來舉措推錢素以詩禮家門常誦念思難三字以含忍至于今日佇待法庭之嚴處也伏乞至公無私明察理之下不委於本官發差捉致文達天於嚴鉞之下頭質明查果如狀辭則法其法罪其罪以一憲百是乎遣債錢自辛卯七月至今四十三朔每兩頭逐朔計五分邊並本利推給使奴矣身上典今三月內上京報債之地千萬祝手敎是事

兼察理使道上典主 處分

乙未三月 日 白活

使

(題辭) 負此當報 延拖捱過 是何委折是加喻 查處次 隻民起送向事 初九日 隻在爲施行

을미년 3월에 하귀 김진사댁 노비 동이가 겹찰리사도에게 올린 진정서이다. 내용은, '위 진정하는 바는 두 번째 진정으로 매우 황송하오나, 아주 병으로 아프면 반드시 부모를 부르게 되는 것은 사람의 상정일 것입니다. 외도리 문달천은 본래 제주부내의 영(營)의 하리(下吏)로 옮겨 거주하는 자인데, 그 사람됨이 귀신이 되었다가 물여우가 되는 흉협하기가 헤아릴 수 없는 놈입니다. 기생인 누이가 영읍(營邑)의 권척(權戚)의 좌우여서 이 때문에 세력을 빙자하여 도리에 어긋나게 남을 헤치는 마음이 이르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 사도님께서 친히 조사하고 추궁함을 베풀지 않으면, 그를 감히 누구도 어찌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몸의 상전이 지난 신묘 7월 과시(科試)를 구경하려고 상경하는 여비인 논 값 돈 2백 냥을 위 문리(文吏)가 가까운데 맡겼다가 바꾸어 쓸 수 있다기에 부(府)안의 그의 집에서, 곧 내어주기로 하는 뜻을 써서 표지(票紙)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떠나게 되어 포구로 내려가려 할 때에 계속 방문하여 찾으러

간증 몰래 도망하여 숨어 버렸습니다. 이 몸의 상전은 부족한 전대로 상경하였다가 쓸 비용이 모자라고 떨어져 5푼 이자로 태복시 마계전(馬契錢)을 빌려내어 당오전을 1천 냥을 엽전 2백 냥 대신에 썼는데 지금까지 갚지 못하니. 이자 위에 이자가 더하여 마침내 엽전 9백여 냥이 되었습니다. 이런 내용은 외도 온 고을 수백 명이 환히 모두 알고 있습니다. 무릇 환전에 신용을 잃으면 그 사이 불필요한 비용과 이식을 내어주는 것은 비록 본전보다 10배가 되어도 전적으로 집행하여 쓴 자에게 징수하여 받은 것은 서울에서 시골에 이르기까지 통행하는 예규입니다. 그러나 위 문가는 환전하는 뜻을 집행하여 쓰며 제멋대로 해놓고 도망가 숨어서 아직까지 갚지를 않으니, 이것은 대낮에 위협하여 빼앗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하물며 또 신묘 9월 19일은 전 사도님이 입도한 날이었음에야 이 몸의 집 상전께서 소(訴)를 드리려고 부(府)안에 들어간즉, 문달천이 그 기미를 알아차리고 그 입을 덮으려고 그 동생을 시켜 무뢰배 몇 냥을 거느리고 밤중에 뜻하지 않게 갑자기 죽을 지경에 이르도록 구타를 하여 새든 집 사람이 어깨에 메고 본래에 있던 며칠을 피를 토하였습니다. 의약으로 치료를 하니 5개월 지나서야 겨우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관찰사께 억울함을 호소하려 한즉 위 문리(文吏)가 형리와 함께 소장을 받지 못하게 하니, 호소할 만한 곳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동향을 관찰하면서 군자들은 특별히 더 개탄하고 있습니다.

이 몸의 상전은 온 섬에서 백성에게 명망이 있으므로 어찌 사사로이 자기가 잡아다가 돈을 따지는 행동을 하겠습니까? 평소 시와 예를 아는 가문으로서 항상 분사난세 글자를 외우므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참으면서 법정에서 엄하게 처단해 줄 때를 기다렸습니다. 삼가 비옵 전대, 지극히 공정하고 사사로움이 없이 밝게 살피시어 찰리사의 책임 하에 본관(本官)에게 맡겨 파견하게 마시고 문달천을 붙잡아가 엄한 도끼 아래 대질하여 명백히 조사하여 과연 소장의 말과 같다면, 그 법대로 법으로 집행하고 그 죄대로 죄를 다스리면, 한번에 백사람을 징계하는 것이 되며, 빌린 돈은 신묘 7월에서 매달마다 5푼 이자로 계산하여 본전과 이자를 아울러 미루어 지급하여 이 몸의 상전으로 하여금 이 3월 안에 상경하여 빚을 갚게 하여주시기를, 천만 두 손을 비벼 비는 바입니다.'라고 쓰여있다.

이에 대한 사도의 처분은 '이렇게 어겼으면 일찍 갚아야 하거늘, 지연되어 지나왔으니, 이 무슨 곤질이던지, 조사 처리하려고 상대편 백성을 기송(起送)할 것이며, 초9일 상대편과 더불어 시행할 것임'이라고 처리하였다.

5-2-1. 소지

龍潭里高雲址

右謹陳所志事段矣身若非憤冤之事豈敢干 嚴威之下乎暫時造泊之除沙水洞居梁別將人愚請故占山次可論之際千萬意外本洞高兵房爲名者不問真僞佩鐵無難破碎分叱除良彙說口不可言所謂彼此相去葉柵八十步之外悖惡不己如此則死者何處安其葬生者何以墳保乎右由仰陳爲白去乎 洞燭教是後右漢捉致法下以治非理行惡之習使其殘所業破鐵推給是乎彌俾無橫失之嘆千萬祝手爲只爲

行下向教是事

觀察使道主處分

丙申十二月日



병신년 12월에 용담리 고운지가 뭇자리를 정하는 과정에서 생긴 문제를 관찰사도에게 올린 소지이다. 내용은, '사수동에 사는 양별장이란 분이 간청하기에 뭇자리를 보던 차 선택할 만한 즈음에 천만 뜻밖에도 본동의 고병방이라고 불리는 자가 옳고 그름도 물어보지 않고 패철(지관이 지나는 지남철)을 어렵지 않게 부숴버릴 뿐 아니라 계속 입에 담지 못할 말을 하며 서로 웃설(묘의 가장자리)에서 80보 밖으로 떨어져야 한다고 말하며 패악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으면 죽은 사람은 그 영장을 어디에다 안치하겠으며, 산 사람은 어찌해야 분묘를 확보하겠습니까. 이상의 사유를 우러러 진술하오니 통촉하신 후에 위 냥을 붙잡아다가 법 밑에 이치 없이 행악하는 벼룩을 다스리시고, 그 못쓰게 된 지남철을 추급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쓰여 있다. 그러나 이 소지는 관찰사도의 수결과 제사(題辭)가 없으므로 접수된 것이 아니거나, 보관용으로 두었던 사본으로 보인다.

5-2-2. 소지

三姓祠掌議高濟澄

右謹陳所志事段矣身以庸魯無似之質叨忝本任而適當農務行公末由亟

賜達段俾便公私之地望良只爲

行下向教是事

使道處分

丙寅七月

(題辭) 依施向事廿二日

병인년 7월 삼성사 장의 고제징이 사도에게 올린 청원서이다. 내용은, '삼가 바라는 것을 진술하는 일인즉, 이 몸은 어리석고 무식하여 견줄만한 바탕이 없어 본임을 욕되게 하고 농사일에 힘쓰기에 적당하므로 공무를 행함에 어찌 할 수 없사오니 서둘러 베푸심을 바꾸어 고쳐 공사간에 편하게 하도록 바라옵기에 분부를 내리실 일입니다.'라고 쓰여있다. 사도는 청원을 받아들여 22일 그대로 시행하라고 처분을 내렸다.

5-3. 출선기

丁丑六月日出船記

邊幕私販沙工白永世格金汝宗金大

吉李光松金在典夫日祿船主金大

卜等相考出送次

軍官李

使



정축년 6월에 변막리 사판선의 사공 백영세, 곁꾼 김여종·김대길·이광송·김재전·부일록, 선주 김대복 등에게 준 출항허가증이다. 군관 이가 작성하여 목사의 결재를 받았다.

5-3. 노인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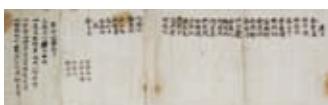


丁丑三月日 路引記
內都私商金基杓相考出送次
軍官李
使

정축년 3월 내도리 사상(私商) 김기표에게 발급된 여행허가증(선박탑승증)이다. 군관 이가 작성하고 목사의 결재를 받았다.

6. 공동의 가치를 위한 조직

6-1-1. 계



座目

金粲孟 任京煥 任聖赫 高山斗 李秀增 朴利柄 姜致郁 金箕煥 金興郁 鄭永得 任聖覺
金春化 張智化 河星洙 河星集 任聖周 金明煥 金興鉉 梁永寬 李桂昌 高士彦 河永進
河瑞黃 鄭翼輔 洪仁杓 任聖甫 高仁玉 金致伯

原

金允直

下所任任

上所任高

公員任

契長金

契錢設置條目

元錢壹佰肆拾兩

一. 慶弔相問事伍兩一次是齊

二. 契會以十二月二十七日限定是齊

三. 契錢出利一朔參分式爲例是齊

계 구성원의 명단과 계전(契錢) 설치의 규정을 적은 문서이다. 설치 조목의 내용을 보면, 경조사 때 5냥을 한차례 내며, 계회는 12월 27일로 한정하고, 계전 이자는 매달 3푼씩 한다는 규정을 적고 있다.

6-1-2. 계



設契條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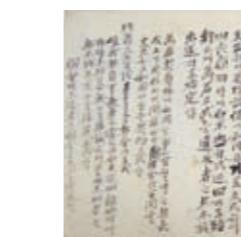
或問於予曰此契何爲而作也予應之曰
諸益將欲與責善急難而作也 曰將責善
急難之道何如耶曰不順法度者曉諭而教
之不使得罪於鄉黨若有疾病則匍伏而救
之以待回春於鍼藥事其父老如吾之父老
視其子弟如吾之子弟喪變凡節一一顧護
浪遊雜技這這禁斷則將可爲里仁之
俗庶幾爲風化之漸矣豈不善豈不美哉
問者笑曰此數件事親父老親兄弟尚
可難矣況於他人乎或恐爲人之恥笑也曰
否古人窮則救之不避魏齊之厄久而敬
之豈非晏子之善乎責善者朋友也急難
者兄弟也不能責善則此非朋友之道也
且不能急難則此非兄弟之誼也而契中
諸益或爲叔侄或兄弟或爲親戚或

爲姻姪同心同德之人也於其責善急
難之道何難之有問者唯唯而退予次
其問答之言將其急難之條書之于首

諸條目

- 一. 凡有疾病匍伏往救是矣懈忽者無本錢出送是齊
- 一. 凡有喪難喪所葬後凡節一一周護是矣若有怠慢者無本錢出送是齊
- 一. 若爲人之誣陷而逢橫厄者諸益同心雪冤是矣視以楚越者無本錢出送是齊且間於齊楚者無本錢出送
- 一. 同契間爭鬭者問其曲直後直者論責而曲者出送是齊
- 一. 教誘契中子弟同入於浪遊者無本錢出送是齊

계를 설치하며 목적과 규정을 정하여 놓은 문서이다. 조목에 보면, 질병이나 상을 당한 자를 도와주지 않고 게을리하거나 소홀히 하는 자는 본전을 돌려주지 않고 내보낸다 등의 규정을 적어놓았다.



6-2. 담상계

立式

右立式報는 唯我契員名下에 一金五百圓式 支出하야 花壇設備에 私用하기로 立式하며
四喪顧助時에 白米 大一升式 巡回키로 結約하며 萬若 立式을 違反者는 無本錢出送키
로 決定함



萬若 契員外에 私用할 事가 有할 時는 契長及上下所任의가 問議하야 索金 六百圓을
支出하고 私用케 함을 契約立式함

檀紀 四二八九年 陰 十二月 二十三日 契會時立式

唯我契員中 喪事が 當하야 白米 巡回顧助時에 卽時 未納이 全無기로 結議하며 二三
次 未納者는 無本錢出送키로 決定立式함

總會時 未添者는 闕金百圓으로 結定함

봉개리의 상계이다. 상계는 보통 부모, 본인, 배우자의 4상(四喪)에 필요한 경비와 노동력을
충당할 목적으로 조직된 계이다. 봉개리처럼 상계는 흔히 같은 마을의 거주자나 같은 관청
의 관료들 사이에서 성행했다.

7. 수연시로 환갑잔치를 흥겹게

7-1. 수연시



謹呈壽宴韻

春回鐵樹月小春
應知此日石齋春
連床二棟綿綿地
映砌七蘭色色春
蟠桃扶助三千甲
鶴髮平安六十春
宴酣之樂與誰樂
過客華堂共樂春

情下生 丁炳律 謹稿

삼가 환갑잔치를 맞아 운에 따라 드립니다.

소철나무에 봄이 오고 10월이라
웅당 이날이 석제의 봄임을 알겠네
상에 늘어선 두 당체꽃 땅에 이어있고
섬돌에 비추는 일곱 난초 색색이 봄을 맞네
신선계 복숭아로 3천 화갑을 도우니
학처럼 흰머리 육십 화춘에 평안하리
이 술자리의 즐거움 누구와 더불어 즐기나
지나가던 나그네 잔치집에서 화춘을 함께 즐기네

정하생 정병률 삼가 씀



8. 저승길에 마지막 남은 일

8-1. 화허문

光緒五年己卯十月初三日子女等處和許文

右文爲和許事鳴呼家夫早夭而吾亦年逾六十必知餘日之不多則如干流來田畠與自起之物
各其分給于汝矣等處是矣 先祖與吾矣夫妻奉祭段依吾生前舉行永久勿替者
後

長子聖集衿

- 草家三間一鞭及五間一鞭基地 皮牟壹斗伍升付 標東任元亘家坐田
 - 山川員 流來田 皮牟壹石付標東高成祿田
 - 後田員買得田皮牟拾斗付標東小路
 - 望田員買得田皮牟柒斗付標東金基行田
 - 遠石員買得田皮牟柒斗付標東金基行田
 - 旨乙員流來田貳庫合皮牟肆斗付標東姜起保田
 - 後田員買得田皮牟貳斗付標東長姪叔田
 - 里內員買得田皮牟貳斗付標東金益保田
 - 里內員買得田皮牟肆斗付標東金德元田
 - 里內員買得田皮牟參斗付標東門路
 - 各巨浪員買得田皮牟肆斗付標東金德用田
 - 明月畠員粗種壹斗參升付標東水洞
 - 同員粗種柒升付標東姜哥畠
 - 島穴員流來田粟種參升付標東長姪叔田
 - 島穴員買得田粟種貳升付標東梁哥田
 - 長水旨員買得田粟種捌升付標東梁哥田
 - 平水田員買得田皮牟參斗伍升付標東小路
- 長女衿
- 各巨浪員買得田皮牟柒斗付標東梁俊成田
 - 里內員買得田皮牟伍斗付標東咸順長田
 - 進己田員買得田粟種陸升付內東邊參升付標東任萬八田
- 第二女衿
- 小王伊旨員買得田皮牟柒斗付標東尹哥田
 - 朱屈員買得田皮牟柒斗付標東李京祿田
 - 進己田員買得田粟種陸升付內西邊參升付標東金興詩田
- 未分段水頭員皮牟參斗付標東金德宗田死後喪需擔當次
- 元財主 母 洪氏
- 門長 姮長叔 河
- 筆執 姮宗孫 呈吾

1879년(고종16) 10월 초3일에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 홍씨 역시 60세가 넘어 살 날이 많지 않음을 알기에 유래전과 모은 재산을 장자인 성집과 딸들에게 고루 나누어준다 는 내용을 적은 화허문이다.

8-2. 도허문

乾隆肆拾壹年丙申捌月貳拾日各子女等處都許
右都許明文事段吾以八字崎險早失嚴父
只奉母親累累喪室之見資生之中惡命
未盡已至于今略干衿得田畠及數口奴婢
與自起買得田畠前都許例祖上掃祭條施
行爲乎旣前妻無後只有一女揆以前後事勢
計無奈何故後室子德恒凡掃祭之物次知事
論理成置爲去乎若有雜之弊是去等持此
文告官卞正事
後
祖上掃墳祭條
高祖父母, 曾祖父母, 當祖父母, 父母兩親
戶婢土玉一所生奴水廻年三十戊辰生及
同婢女水良年十九己卯生
祭器鉢同海壹鉢貳部鉢九口壹
鉢著壹沙大接貳介沙花杯臺俱一
木果器伍介木爭盤貳竹木杯壹
俱壹部
- 楊老浦員畠拾貳片合租種貳斗伍付北官畠
- 萬之刷員立石田二合皮牟壹石伍斗付只北小路
- 逆水員山坐田粟壹斗付獨子員山坐田皮牟
參斗付只
吾之妻尹召史高召史掃墳祭條
- 黃牛伊員四片畠合租種壹斗付只南長女衿
- 塞達里安詣隆處買得田皮牟拾斗付只西奴千化家
- 猶來前神堂員妻母前衿得田皮牟陸斗付只東
里內員五寸金世興處買得田皮牟貳斗付只北姜啓良家
三子十歲前以前妻之獨子情理可
哀故後妻高召史合口生所員張衣順處
買得田粟種壹斗付東朴太茂田
金今奴處買皮牟貳斗付家基同入西邊
長女衿 里內員妻母前衿得田家基皮牟參斗付
- 水井員金全益處買得皮牟壹石伍斗付只
- 里內員金鼎大處買得田皮牟肆斗付只
- 望所只員皮牟伍斗付只東南水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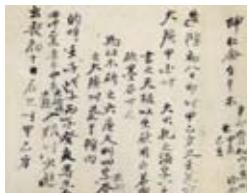
- 于希旨員五片合粟種壹斗付只
- 文汝宗洞員粟肆升付只
- 里內員金河伯處買得田皮牟肆斗付只西金萬隆田
- 航歸員姜萬海處粟種壹斗付只北李殷成田
- 刷堂員李弼文處買田種壹斗付東
- 猶來黃牛伊員五寸金世興買畠一片租種柒升付只北吾
矣祭條農牛壹首俱景子旣已給牛貳首汝矣夫禮納
是遣孫子茂春禮牛伍首納行爲有在家舍貳鞭
及家間器皿與小小雜物並只傳授壯雌牛壹首
長子德恒衿 家舍及坐地外田并皮牟伍斗付只
- 楊老浦員西邊畠陸片合粟種伍升付只東德孚衿
同員姜雄起處買得畠十二片合租種伍升付只東成以完畠
- 黃牛伊員三片畠租種伍升付只
- 方下洞員皮牟參石付只南金德河田
- 鷹旨員二合皮牟柒斗付只夏員粟種柒升付只
- 鳥足石員粟伍升付只同員粟種肆升付只
- 楮木泉員粟陸升付只
- 塞達里內員梁孝貴處買得田皮牟陸斗付東金德海田
同員高江處買得皮牟肆斗付只東金萬隆田
北藪員金中哲處買得田粟陸升付只西高大瞻田
里內員梁孝貴處買得田皮牟陸斗付只疊錄
北藪員婢留上處三合皮牟捌斗付只孫子冥允處別給
知悉屯牛參首
德孚衿 家舍貳鞭及外田梁氏處買得田皮牟貳斗付姜汝山處買得田皮牟陸斗付只
- 望所只員李東昌處買得田皮牟拾斗付只
- 吾老穴員高日處買得皮牟參斗付只
- 望所只金今石處買得田粟種捌升付只
- 城山造命水員金召史處買得皮牟壹石付只
- 入坪員皮牟柒斗付
中里員婢己化處買得皮牟參斗付只
- 仇伊木巨員妻父前買得田粟種壹斗付只
- 北藪員梁立處買皮牟貳斗付只
- 非應田員婢千上處買得田粟柒升付只
- 猶來楊老浦員畠拾參片租種壹斗付北祭畠西
德孚衿屯牛參首
- 里內員張衣順處買得皮牟伍斗付只
財主自筆執 父 赫
訂人 同生弟 金武澤

1776년(영조52) 8월 20일에 재주인 아버지 김혁이 자식들에게 깃득전답 및 노비 수명과 매득 전답을 나누어주면서 작성한 분재기이다. 김혁은 윤조이와 고조이 두명의 부인을 두었는데 전



치의 자식은 딸이 하나뿐이었다. 후처는 덕항과 덕부 두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장자인 덕항에게 조상 소분제를 맡기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조상 소분제조를 제외하면, 분제기를 장녀, 장자, 차자 순으로 기록하면서 장녀의 몫을 다른 아들들과 비등하게 나누어주고 있다는 점이다. 그 외 처가에서 내려온 깃득전 집터를 딸에게 물려주는 것도 눈여겨 볼 내용이다.

8-3-1. 장사택일지



坤化命壬午木 辛卯六月初六寅時終命 主甲辰己亥
造棺初八日卯時甲乙方又壬癸方
大殮申酉時 大火犯之海字一千
書之天板以朱砂用之若無
砂墨書可也
馬柱木斫之六庚天刑四字朱砂書
之大殮時置于棺內
的呼壬子戊子丙子癸亥等生人
呼冲乙未庚午甲午大殮時少避入棺時少避
出喪初十日辰巳時甲乙方

장례에 관한 제반 절차를 시행하기 위해 미리 길한 시간과 방위 등을 정하는 장사택일지(葬事擇日紙)이다. 망자는 곤화명(坤化命), 즉 여성으로 신묘년 6월 초6일 인시에 사망하였다. 내용을 보면, "관짜기(造棺)는 초8일 묘시 갑을 방향 또는 임계 방향으로 한다. 대렴(大殮)은 신유 시이다. 큰 불이 범하니 '해(海)'자 1천 글자를 천판(天板:관뚜껑)에 쓰는데 주사(朱砂)를 사용한다. 만약 주사가 없으면 떡으로 써도 좋다. 마주목(馬柱木)을 쪼개어 '육경천형(六庚天刑)' 4자를 주사로 써서 대렴할 때에 관 안에 넣는다. 적호(的呼)는 임자, 무자, 병자, 계해 등 살아있는 사람이다. 호충(呼冲)은 을미, 경오, 갑오로 대렴할 때 잠깐 피하고 입관 때 잠깐 피한다. 출상(상여 나가는 날)은 초10일 진사 시에 갑을 방향으로 한다."이다.

8-3-2. 장사택일지



乾化命未詳 主孫戊戌牛金
丙午龍未平泡丁入首午坐辰得子
戌青龍腐木險破除化爲妙
透地戊午火龍內卦既濟山禽翼世猶斗
穿山丙午水坐本卦明夷山禽奎世猶井
平分庚午土龍歸藏卦具容子日官鬼
盈縮癸未土度坐星三度吉恩用金水火星歸垣日月水土
正分丙午水穴兼丁三分升殿柳星張
山運甲戌火木火通明大吉本山甲庚午土泊震宮相
葬根己巳木燕 既濟之蹇福有氣動則制辛戌險殃

苗丁卯火猶 棺中不入水廉子孫不害
花丁卯火蝠 漢之仲孚觀子孫之吉凶
課稟壬寅金蛟 能文學而和親
安葬二月十三日寅時初艮時下棺午前三時二十五分
祀土地 同月初二日丑時
穿金井 同月十二日未時戊時先啓午方
停取 甲方坤方
冲 丁酉辛酉癸酉生人下棺時少避則吉
祭主立伏忌申酉戌方
舊墓丁坐午未空
緬移戊辰十二月初十日辰時先破酉方
出柩巳時午方百步外
冲 乙未辛未生人

할아버지의 묘를 이장하기 위해 지관에게 받은 장사택일지이다. 내용은 '병오(丙午)'는 용이 평안하지 못하고 포정(泡丁)이 오좌(午坐)에 머리를 들이지 못하고 진(辰)이 자술(子戌)을 얻고 청용이 썩은 나무와 험한 언덕을 없애니 조화가 묘하다. 투지(透地) 무오화용(戊午火龍) 내괘(內卦)는 기제(既濟)로 산새가 세목두로 날아간다. 천산(穿山) 병오수좌(丙午水坐) 본괘(本卦)는 명이(明夷)로 산새가 세목정을 다리 벌리고 걸어간다. 평분(平分) 경오토용(庚午土龍) 귀장괘(歸藏卦) 구용자가 날마다 관귀(官鬼)이다. 영축(盈縮) 계미토도(癸未土度) 별 3개가 앉아 길하게 건너간다. 은용(恩用)은 금수화성(金水火星)이고 귀원(歸垣)은 일월수토(日月水土)이다. 정분(正分)은 병오수혈(丙午水穴)에 겸정삼분(兼丁三分)이고 승전(升殿)은 유성이 벌려선다.

산운(山運)은 갑술화목화(甲戌火木火)로 통명하여 크게 길하다. 본래 산갑(山甲)은 경오토(庚午土)로 박진궁상(泊震宮相)이다.

장과(葬課), 뿐리는 기사목연(己巳木燕)으로 이윽고 험난함을 견디 복덕의 기운을 가져 옴직이면 신술의 험한 재앙을 제압한다. 썩은 정묘화유(丁卯火猶) 관중(棺中)에 물을 들이지 않아 자손을 살펴 해롭지 않다. 꽃은 정묘화복(丁卯火蝠) 가운데서 믿어 빚이 나니 자손의 길흉을 살피리라. 열매는 임인금교(壬寅金蛟) 문학에 능하여 화친하리라.

안장은 2월 13일 인시 초 간시 하관, 오전 3시 25분이다. 토지에 제사는 동월초 2일 축시, 묘혈 파는 것은 동월 13일 미시, 술시로 먼저 오방(午方)부터 연다. 정취(停取)는 갑방, 곤방이다. 충(冲)은 정유, 신유, 계유년생 사람은 하관할 때 잠깐 피하면 길하다. 제주(祭主)는 서거나 엎드릴 때 신, 유, 술방을 피한다.

구묘는 정좌(丁坐)이며 오미(午未)는 비운다.

면이(緬移:이장)는 무진년 12월 초10일 진시에 유방(酉方)부터 판다. 출구(出柩)는 사시 오방(午方) 1백보 밖에서 한다. 충(冲)은 을미, 신미생 사람이다.

9. 목판



輓崔善吾 大造
輓南雲用
卷第三
跋
陶山書院廟變後復跋 代士林作
請鶴峯先生陞廡跋 代士林作
書
上定齊柳先生 二
別紙
上定齊先生
拓菴先生文集目錄 十三
別紙
答內舅箕疇鄭公
上外舅帆溪李公 璞
答李方伯 客直 0二
與洪候 鍾英
答與洪
與宋候
答權頤齊
與李丈始百 敦稷
答權丈 錫元
答姜建夫 楛0四
與姜建夫 三
答柳文用 道禧
答李世胤 錫永0二
答李公善 性和
答朴伯賢 永魯0二
答洪而煥 龍佑
答李會可 進榮
答權士則 鍾
答內兄鄭武可
拓菴先生文集目錄 十四
卷第四
書
與李大而 三
答黃同輔 蘭善
與柳聖源

答柳聖源

答權道源 準衡

答柳弊執 建鎬0三

答申聖心 翼敬

答李能伯 翩九

척암선생문집 목판이다. 척암은 조선말기 학자이자 의병장이었던 김도화(金道和:1825~1912)의 호로 이 책은 그의 시문집이다. 척암은 경상북도 안동에서 태어났다. 유치명에게 학문을 배웠으며 퇴계 이황의 맥을 이었다. 1893년 69세의 나이로 유일(遺逸)로 천거되어 의금부도사에 제수되었다. 1895년 을미사변이 일어나자 일제의 침략아욕을 분쇄하자는 내용의 안동 통문을 각지에 돌렸으며, 다음해 의병대장에 추대되어 의병활동을 지휘하였다. 1896년 태봉 전투에 참전하였으며, 그 뒤 노환으로 은거하면서도 을사조약과 경술국치를 맞아 항의문과 규탄문을 통하여 일제에 항거하였다. 1990년 건국훈장 애국장에 추서되었다.

